규장각 소장 全州全氏 中人집안 고문서 고찰

- 全得龜(1740~?) 가계를 중심으로 -

박 철 민*

1. 서론
2.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발달과 全得龜 가계
3.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현황
4. 문서의 종류별 특징
5. 결론
부록 1. 전주전씨 중인집안 가계도
부록 2.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중인집안 고문서 목록

초록: 이 글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全得龜 집안 고문서를 살펴본 것이다. 전득구 집안은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일원으로 18세기 이후 주요 잡과 배출 가계인 全爾常의 次男 집안이다. 현재 규장각 소장 문서 중에는 전득구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이 간직하였던 집안 고문서가 적어도 199점이 확인된다.

해당 집안의 고문서는 全得龜의 장남 全興大의 활동시기 주로 형성되어 19세기 말까지 집안에 소장되다가 일제강점기 고문서상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 판매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서는 시기적으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걸쳐져있다. 문서 중에는 告身 및 官誥 등의 임명문서를 비롯하여 공인문서, 토지 및 가옥 매매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토지 및 가옥 매매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舊文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전득구 집안에서 19세기 말까지 소유하였던 토지 및 가옥 문서의 연계문서를 찾아 문서 간의 관계 정리를 시도하고, 이를 표로 제시하였다. 전득구 집안의 토지 및 가옥 매매 문서들은 중인의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핵심어 : 中人, 古文書, 醫官, 土地買賣, 家屋買賣, 經濟活動.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박사수료.

1. 서론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된 全州全氏 中人[1]집안 全得龜(1740~?) 가계 고문서를 소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규장각에는 5만 건이 넘는 많은 분량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해당 고문서들은 대개 일제강점기 수집된 것으로, 조선 후기의 다양한 문서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토지 관련 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2]

해당 문서들의 수집 배경은 명확하지 않으나 배경적 측면에서 1910년대부터 일제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조선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시행한 조선총독부의 朝鮮舊慣調査와 같은 성격이 있었으리라 보는 견해가 있다.[3] 수집 방식은 박병호(1992ㄱ)에 수록되어 있는 雲樵 張之兌(1892~1962)[4]의 증언을 참조할 수 있으며,

---

1) 본고에서 언급하는 중인은 서울을 중심으로 世居하며 譯官, 醫官 등으로 활동한 이른 바 기술직 중인들을 지칭한다.

2) 문서의 수량은 규장각 사이트, 수집 및 정리는 박병호, 1992ㄱ「고문서 자료의 수집·정리 문제」,『정신문화연구』15권 4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진석, 2005「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규장각』2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진석, 2006「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 조사 정리의 현황과 과제」,『영남학』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등을 참조하였다. 이외에도 박병호, 1992ㄴ「奎章閣所藏 古文書와 그 性格」,『민족문화논총』13을 통해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개괄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규장각의 문서는 종류가 풍부한 반면, 萬曆 이전 자료는 239건으로 비중이 적으며, 대개 18~20세기 초에 발급된 문서들이다. 특히 토지 관련 문서가 5만여 건 중 3만여 건에 달한다.

3) 양진석(2006)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의 舊慣調査 사업을 거론하며 이때 2,800여 건의 고문서가 복사 및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되었음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의 무분별한 고문서 수집 또한 총독부의 구관조사 사업과 같은 정치적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4) 본관은 漢陽. 부친은 議政府主事를 지낸 張鴻植(1864~?), 조부는 張始潤, 증조부는 張道成이다. 해당 인물은 당시 魚允迪, 玄檃 등이 참여한 참사관분실의 도서정리 사업(1912~22)에 참여하였으며, 경성제국대학 조수,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관으로 활동하였다. 장지태의 가계·이력은 박병호(1992ㄱ); 한영우, 1997「규장각자료의 정리와 활용」,『국사관논총』73, 국사편찬위원회; 박종근, 2019『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머문 35년의 흔적』, 도서출판 해남과 경매에 나왔던 張鴻植의 1894년 準戶口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장홍식의 준호구는 코베이(http://www.kobay.co.kr/kobay/item/itemLifeView.do?itemseq=1711ULLJ5JM)

이를 통해 경성제국대학 당시 고문서 상인들이 일정한 지방 및 가문을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수집된 문서를 경성제국대학 소속의 교수들이 구입하는 등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5)]

이와 같은 규장각의 고문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정리가 시도된 바 있으나, 5만여 건의 고문서 전체를 전수 정리한 첫 작업은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장지태, 박병호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6)] 이후 1964~5년[7)]에는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차 정리가 시도되었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정리[8)] 및 웹서비스화가 이루어져 현재 규장각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규장각 소장 고문서는 다양한 문서종과 5만 점이 넘는 수량이라는 점에서 고문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9)]에서 활용되고 있다.

에서 볼 수 있다.

5) 雲樵 張之兌는 경성제국대학 조수로 근무한 바 있으므로 경성제국대학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박병호(1992ㄱ)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위와 같이 소개하였다.

6) 박병호(1992ㄱ: 6-9)를 통해 규장각 소장 고문서는 1940년 일부 정리가 시도된 바 있으며, 1957~62년 간 당시 미등록된 고문서까지 처음으로 모두 정리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전수 정리에 참여한 인물로 1957~62년까지 참여한 張之兌, 1958년~62년까지 참여한 朴秉濠, 1959~60년까지 참여한 李鍾世가 있다.

7) 해당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고문서 정리 사업은 박병호(1992ㄱ)에서는 1964년, 양진석(2005)에서는 1965년부터 고문서목록의 카드화 작업이 추진되었다고 하여 시기가 일부 차이가 있다. 옌칭연구소 연구비 지원을 통한 고문서 정리 사업은 崔承熙, 金鍾元, 田光鉉, 孔在錫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최승희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진석(2005) 각주 10번 참조.

8) 이외에도 양진석, 한영우의 연구에서 언급된 1962년 미국 Ford재단 연구비 지원을 통한 舊韓國 外交文書 정리, 1978년부터 시행된 正書 작업, 2003년 토지문서 2만여 건의 정리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9) 연구를 예로 들면 규장각 소장 고문서는 한국고문서학회의 『고문서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의 학위논문 등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으며, 노인환, 2013 「조선후기 敎書의 발급 과정 연구」,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경목, 2016 「조선후기 학동들의 탄원서 학습」, 『전북사학』 49; 박성호, 2020 「환수된 대군주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 13, 국립고궁박물관; 박철민, 2020ㄱ 「조선 전기 改名牒과 조선시대 개명첩 양식의 변화」, 『규장각』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학술지에서 해당 고문서들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특정 가문의 전래 고문서와 같이 특정한 집안을 카테고리로 형성하여 전반적인 문서의 현황과 개별 문서가 어떠한 문서와 연계되었는지 등을 소개한 연구는 보기 어렵다.[10] 특히 아직 규장각 소장의 고문서 중 특정 중인집안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11] 필자는 규장각 고문서를 살펴보던 중 全州全氏 중인집안의 전득구 가계가 소장했던 199점[12]의 고문서가 규장각 고문서에 포함되어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중인집안의 문서가 일반 사대부 집안의 문서에 비하여 수량이나 소장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13]

고문서를 포함한 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학적 관점에서 관련 문헌의 파악, 배경적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

---

10) 연계문서에 대해서는 양진석(2006: 99)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규장각에서 수집된 고문서를 정리할 당시 관련문서를 연계시키는 점에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이 같은 상태에서 문서에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취득경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원문의 전산화 작업을 통한 연계문서 파악을 언급하였다. 이외 한 개인과 관련된 규장각 소장 문서를 정리하여 제시한 연구로 조경구, 2003「고문서 정리(整理), 기술(記述)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11) 德成外志子, 2002「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는 해당 집안이 중인인 것과 공인문서를 중심으로 해당 집안의 공인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가계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주제로 인해 전득구 집안 고문서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가 德成外志子(2002)와 다른 점은 확인 가능한 선에서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 전체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12)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문서는 총 199점이다. 해당 수치는 전득구 집안의 문서로 여겨지나 불확실한 문서는 연구의 정밀성을 위해 배제한 수치이다. 그러므로 규장각 소장 고문서 중 전득구 집안 고문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13) 특정 중인집안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근래의 연구로는 박철민, 2020ㄴ「19세기 서울 順興安氏 中人집안 전래 고문서 고찰」,『고문서연구』57, 한국고문서학회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당시까지 알려진 다섯 곳의 집안 전래 고문서와 그 수량 등을 소개한 바 있다. 다섯 집안의 전래 고문서 중 가장 많은 수량은 천령현씨 집안으로 박철민(2020ㄴ: 61)에서 전체 218점으로 계산한 바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전득구 집안은 현재 199점이 확인되므로, 천령현씨 집안 고문서에 못지않은 수량임을 알 수 있다.

지지 않으면 해당 문헌이 지닌 사료적 위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특정 문헌과 관계된 기관, 집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성격이나 면모를 살펴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헌학적 관점에서 연계문서를 찾아 연결함으로써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기초적 성격 파악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인 자료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규장각 소장 全得龜 가계 고문서를 소개하도록 한다.

2.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발달과 全得龜 가계

문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배경적 측면에서 全州全氏의 중인집안 발달 시기와 全得龜 가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全州全氏는 현재 完山全氏로 알려져 있으며 旌善全氏의 한 갈래이다. 中始祖는 始祖 全聶의 30세손인 全濮이며, 全濮이 高麗 恭愍王代 中郎將으로 홍건적 격퇴에 공을 세워 推忠靖亂扈聖功臣에 녹훈되고, 完山伯에 봉해지게 됨으로써 후손들이 전주를 貫鄕으로 삼아 세대를 이어왔다.[14]

중인의 종합보인 『姓源錄』[15]과 榜目을 참조하였을 때 조선 후기 중인으로 활동한 전주전씨는 대개 司果 漢孫의 후손들[16]이다. 漢孫보다 上代의 인물은 『성원록』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1991년 발간된 『全氏大同譜』[17](이하 족보)를 통해 漢

14) 이상은 김진근, 2015 『한민족 성씨의 역사』, 보문서원을 기반으로 정리·소개한 것이다. 본고에서 서술할 집안의 본관은 전주 또는 완산으로 불리지만, 당시 고문서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본관을 전주로 표현하고 있으며, 방목에서도 전주로 표현되므로 본고에서는 전주전씨로 통일하여 서술하겠다.

15) 李昌鉉이 편찬한 종합보로, 10권 1책의 필사본이다. 1985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인 제13호로 발간된 바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성원록』은 모두 해당 영인본을 바탕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가계는 영인본의 588면에 수록되어 있다.

16) 본관이 全州인 全氏 집안 출신 中人 중 계보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 존재한다. 이들은 孝健, 孝晩 등의 집안으로 ●大, 孝●, 宅●, 致●와 같이 사용된 돌림자가 일정하다. 해당 돌림자는 현재 漢孫의 후손으로 파악된 전주전씨 집안의 돌림자와 일치하므로 이들 또한 漢孫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17) 全氏中央宗親會, 1991 『全氏大同譜』, 大譜社.

孫이 完山白 全潗의 5대손인 것을 알 수 있다. 족보 및 『성원록』에서는 해당 집안이 언제 서울 인근에 터를 잡았는지 알 수 없으나, 한손의 손자 雲(1550~1632)의 墓가 楊州 延曙佛老里에 있는 것을 보아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서울 또는 인근에 터를 잡았으리라 여겨진다.

해당 집안에서 배출된 첫 醫官은 기록상 雲의 부친 龍이다. 龍은 『성원록』에서 醫科 입격자이며 石陵君이라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 石陵君 全龍은 同名異人이므로 『성원록』의 편자인 李昌鉉이 착오를 범하였거나, 해당 집안의 전래 가승에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유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18] 全龍에 대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방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과 입격 기록 또한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全龍 이후 방목에서 확인되는 전주전씨 최초의 雜科 入格者는 雲의 손자 天機(1610~?)이다. 해당 인물은 1635년(인조 13) 譯科에 입격하여 淸學譯官으로 활동하였다. 혼맥과 연대기 사료를 살펴보았을 때, 전주전씨 집안에서 배출한 초기 중인인 全龍과 全天機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 중인으로 진출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全天機의 역과 입격과 처부가 김해김씨 중인집안 출신의 역관 金慶生(1587~?)[19]인 점, 사촌인 天杓(1627~?)[20] 또한 漢學譯官으로 활동한 점 등을 보아 적어도 全天機의 조부인 雲이나 父親인 海仁(1587~?)代에 이미 중인집안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천기와 전천표의 후손 중에서는 이후 잡과 입격자가 확인되지 않으나 전천기의 동생 全天柱[21](1615~1669)가 1646년(인조 24) 寧國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고

---

18) 이와 같은 『성원록』의 오류는 김두헌, 2010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 중인 가계 연구」, 『서울학연구』 3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박철민(2020ㄴ)에서 지적된 바 있다.

19) 해당 인물은 『성원록』 33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해당 인물은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원록』과 방목을 통해 全天機의 부친 海仁의 아우인 應仁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므로 두 사람은 사촌지간인 점을 알 수 있다.

21) 족보에서는 寧國功臣에 녹훈된 이가 海仁의 3남 天桂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寧國原從功臣錄券』을 살펴보았을 때 전천주의 이름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녹권을 기준으로 삼아 전천주가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된 것으로 기술하도록

이후 전천주의 후손들은 무관직을 역임하며 지속적으로 중인집안과의 혼맥을 쌓아 왔다는 특징을 지닌다.[22] 天柱의 玄孫인 爾倫(1713~1785)에 이르러서는 惠民署主簿로 활동한 것이 확인되며, 爾倫의 아들[23]과 爾倫의 동생 爾常(1716~1782)의 후손들이 惠民署, 司譯院 등에서 활동한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爾常의 자손들은 19세기 말까지 譯科, 醫科에 입격하는 모습을 확인[24]되므로 18세기 이후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주요 잡과 배출 가계는 爾常의 후손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고문서 중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문서는 全得龜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이 소장했던 문서로 파악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25]는 1765년(영조 41) 全得龜(1740~?)가 한성부에게 발급받은 準戶口이며, 가장 늦은 시기 발급된 문서는 1895년 全得龜의 5대손 全晙基(1873~?)와 그의 처 淑夫人 金氏에게 발급된 官誥들이다. 즉, 본고에서 살펴볼 집안 문서는 爾常의 次男인 全得龜가 수급자 중 가장 上代의 인물이며, 그의 후손인 全晙基가 後代의 인물로, 현전 문서들이 모두 전득구와 그의 후손들에게 발급된 문서라는 특징이 있

한다. 전천주는 寧國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녹권 7b 10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全天柱의 아들 岼熙(1650~1721)는 訓鍊院主簿이며 그의 처남은 譯官 柳秀敏(1644~?)이다. 전천기의 사위는 역관 金尙曜(1659~?)이며, 曾孫 昌煜(1694~1752)의 初室은 川寧玄氏 중인집안 玄德萬의 딸이며, 再室은 順興安氏 중인집안 安瑞台의 딸이다. 安瑞台는 박철민(2020ㄴ)에서 소개한 醫官 安載述의 조부이기도 하다.

23) 爾倫의 아들 중 得完(1748~?)은 1771년(영조 47) 律科에 입격한 것이 확인된다. 이후 爾倫의 후손 중에서는 잡과 입격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曾孫 孝達(1800~1823)의 묘소는 楊州인 반면, 玄孫 宅景(1823~1898)부터 묘소의 위치가 전라남도 長城인 점으로 보아 해당 집안은 19세기 초중반 이후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24) 爾常의 후손 중 19세기 후반 잡과에 입격한 인물로는 1888년(고종 25) 역과에 입격한 圭增(1873~?), 같은 해 의과에 입격한 圭成(1867~?) 등을 들 수 있다.

25) 전득구 집안에서 소장했던 고문서 중 토지매매문서의 舊文書는 전득구 집안에서 후대 토지를 매득하면서 소장하게된 것이므로 배제하였다. 토지매매문서의 구문서까지 포함하였을 때 가장 오래된 문서는 1671년(현종 12) 上典姜氏가 私奴朴士龍에게 토지 거래를 위해 발급한 牌旨와 士龍이 金繼男에게 은자 11냥의 값으로 坡州 廣灘面 土亂里 소재 化字畓 11斗 5刀落只를 팔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해당 문서는 1794년(정조 18) 尹永基가 전득구 집안에 토지를 팔 때 本文記로 같이 유입되었다.

다. 즉 1765년부터 1895년까지 약 130년간의 시간에 걸쳐져 중인의 한 집안에 발급되었던 문서라 할 수 있다. 해당 문서군에서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라는 인문이 쉽게 확인되므로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중인집안 문서는 전득구 집안에 전래되던 고문서가 일제강점기 어느 시점에 京城帝國大學으로 유입된 뒤 규장각으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득구 집안은 문서의 내용상 惠民署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인집안임이 명확하나, 『성원록』에서는 전득구 본인을 포함하여 후손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족보에서도 전득구 본인의 이름만 수록되어 있을 뿐, 생몰년이나 字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성원록』 및 족보에서 해당 가계의 마지막이 기재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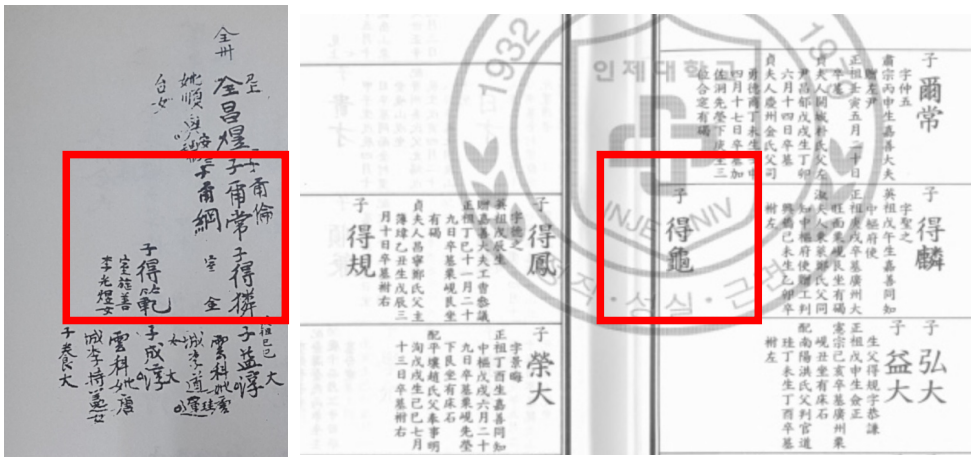

〈그림 1〉 『성원록』(左)과 족보(右)에서의 전득구 가계 기재 부분[26]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인 가계를 참고함에 있어 필수적인 『성원록』에서는 전득구가 누락되었으며, 족보에서는 전득구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또, 해당 집

26) 『성원록』은 영인본을, 족보는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https://genealogy.inje.ac.kr/)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인용하였다.

안은 후손 중 잡과 입격자가 없어 방목을 통한 가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규장각에 소장된 고문서를 기반으로 전득구 이하 자손들의 가계도를 정리하였다.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득구의 가계를 복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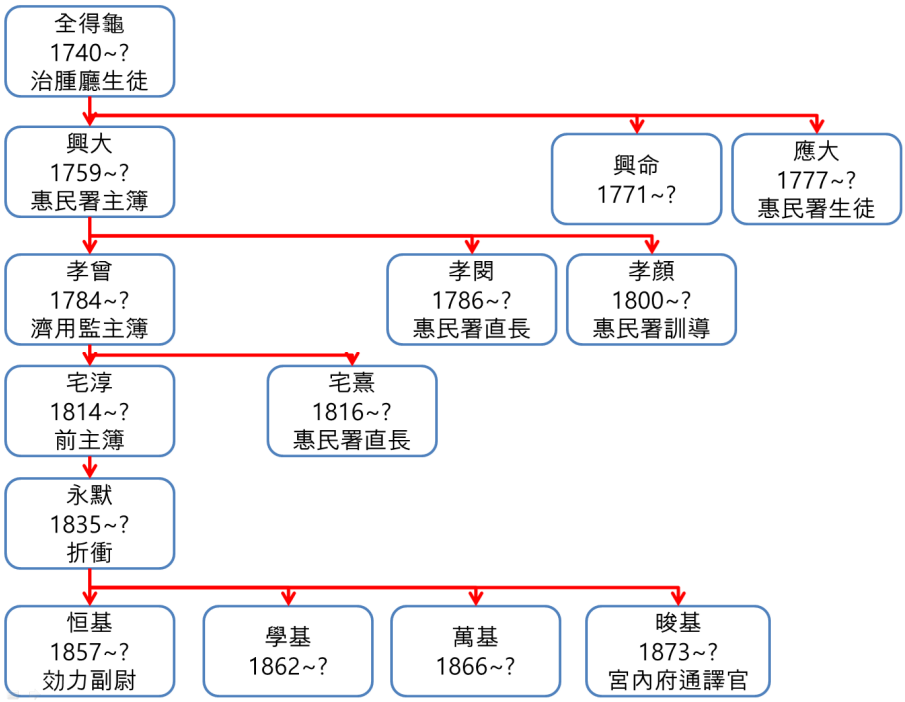

〈그림 2〉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통해 복원한 全得龜의 가계[27]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집안의 고문서 발급자 중 가장 上代의 인물은 全得龜이다. 그는 爾常의 次男으로 형은 景福宮衛將 全得麟(1738~1790)이다. 동생으로는 得鳳(1748~1797), 得規, 得範이 있으며 조카로는 陰陽科 출신의 益淳(1788~1839)과 成淳(1789~?) 寫字官 榮大(1777~1838)[28] 등이 있다. 初室은 稷

27) 해당 가계의 정보는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인물의 몰년은 문서의 발급 시기를 통해 추측할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다.

28) 해당 인물이 사자관이었는지 여부는 김두헌, 2004 「자료 『增補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山崔氏 중인집안 副護軍 崔文徵[29]의 딸이며 再室은 萬戶 時烱의 딸 天安全氏이다. 전득구와 관련된 문서는 1783년(정조 7)까지 확인되므로 1783년 무렵 사망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준호구에서 전득구는 治腫廳生徒로 활동하였다.

全興大(1759~?)는 전득구의 장남으로 惠民署主簿를 지낸 바 있다. 字는 景運이다.[30] 初室은 江陵崔氏 중인집안의 崔德樞[31]의 딸이며, 再室은 開城高氏 중인집안의 成均進士 象煥(1718~?)[32]의 딸이다. 전흥대와 관련된 집안 문서는 1779년(정조 3) 告身을 비롯하여 다수의 준호구 및 가옥과 토지 매매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 가옥과 토지 매매 문서가 많은 편인데 이는 중인의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제로는 興命(1771~?)과 應大(1777~?)가 확인되는데, 해당 인물들은 준호구에서 전득구 또는 전흥대가 데리고 살던 시기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후 분가하였으리라 여겨진다.

全興大에게는 3명의 아들이 확인되는데 첫째 全孝曾은 1784년(정조 8) 태어났다. 해당 인물은 濟用監主簿를 지낸 바 있다. 처부는 朔寧朴氏 중인집안의 朴禧仁[33]이며, 이외 아들 全宅淳의 준호구를 통해 晉州河氏와도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全孝閔은 1786년(정조 10)에 태어나 惠民署直長을 지낸 바 있다. 처부는 錦城朴氏 중인집안의 潤昌이다.[34]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고문서 중에서 그가 직접 받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의 처 錦城朴氏에게 1813년(순조 13)부터 1834년(순조 34)까지 발급된 5점의 준호구가 존재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준호구

제시」, 『대동사학』 3, 대동사학회를 통해 확인하였다.

29) 해당 인물은 『성원록』 842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문서에서는 해당 인물의 字를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烏石製全興大誌石〉(소장번호:신수 7231)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誌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通訓大夫·行惠民署主簿, 全州全公, 諱興大, 字景運之墓[申坐]. 元配淑人江陵崔氏祔右.' 이때 처인 江陵崔氏를 元配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初室은 江陵崔氏이며, 再室은 開城高氏로 여겨진다.

31) 『성원록』 832면에서 확인된다.

32) 『성원록』 772면에서 확인된다.

33) 『성원록』 485면에서 확인된다.

34) 『성원록』 487면에서 확인된다.

인 1813년 준호구에서는 '故奉列大夫 · 行惠民署直長全孝閔妻令人朴氏'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1813년 전효민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全孝顔은 1800년(정조 24)생으로, 惠民署訓導를 지낸 바 있다. 初室은 경주김씨 중인집안 金振禹(1769~?)[35]의 딸이며, 再室은 全州李氏 長川君派 중인집안 출신 譯官 李燁(1794~?)[36]의 딸이다. 전효안은 1843년(헌종 9) 孝石으로 改名한 것이 확인되는데, 현전 문서 중 1848년(헌종 14)과 1850년(철종 원년)에서는 다시 孝顔으로 표기되므로 본고에서는 孝顔으로 제시하였다. 그에게 발급된 문서는 총 12점인데, 이 중 司僕貢房에서 발급한 帖文 등 貢物權을 증명하는 帖文 3점이 확인된다.

全孝曾에게는 2명의 아들이 확인된다. 첫째 全宅淳은 1814년(순조 14) 태어났다. 현전 문서를 보아 해당 인물은 1846년(헌종 12) 御營廳 藥房에 差下된 바 있으며, 준호구를 통해 主簿職을 지낸 바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藥房에 差下되었던 점을 보아 해당 主簿職은 惠民署 또는 典醫監의 主簿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처부는 稷山崔氏 중인집안의 崔宗玉[37]이다. 둘째 全宅熹는 1816년(순조 16)생으로 惠民署直長을 지낸 바 있다. 처부는 林漢坤으로 본관은 會津이다.

全永默은 全宅淳의 아들로 1835년(헌종 원년) 태어났다. 그와 관련된 초기 문서에서는 그를 出身이라 표현하였으며, 1885년(고종 22)부터 折衝將軍 · 行龍驤衛副護軍, 1888년(고종 25)에는 摠禦營騎士將에 單望되었던 점[38] 등을 통해 무관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妻父는 崔錫龍이며 본관은 慶州이다.

全永默에게는 아들로 恒基(1857~?), 學基(1862~?), 萬基(1866~?), 晙基(1873~?)가 있다. 첫째인 恒基는 1895년(고종 32) 內務衙門의 各道視察委員 중 咸鏡道視察委員으로 임명되어[39] 함경도로 시찰을 다녀온 바 있으며[40] 1908년(융희 2)

35) 해당 인물은 『성원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그의 조부 大齡(1704~?)까지가 267면에 수록되어 있으며, 준호구와 방목을 통해 해당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6) 『성원록』 106면에서 확인된다.

37) 『성원록』 846면에서 확인된다.

38) 『承政院日記』 1888년(고종 25) 5월 11일 "兵曹口傳政事, 摠禦營騎士將單**全永默**."

39) 『承政院日記』 1895년(고종 32) 2월 19일 "內務衙門, 各道視察委員, 京畿金禹用, 忠淸左道

중국의 사상가 梁啓超(1873~1929)의 『飮氷室自由書』를 번역하기도 하였다.[41] 처부는 觀象監判官이었던 趙行玉의 손자 永縉이며, 본관은 淳昌이다.

둘째 學基는 1891년(고종 28) 訓戎僉使, 1902년(광무 6) 廣濟院 事務委員 등에 제수되었던 이력[42]이 있으며, 처는 茂朱崔氏이다. 셋째 萬基는 1887년(고종 24) 副司果[43]를 지낸 바 있고, 처는 義城金氏이다. 넷째 晙基는 宮內府參理官, 宮內府通譯官 등[44]으로 활동하였으며 1891년(고종 28) 官立日語學校에 입학[45]하기도 하였다. 처는 慶州金氏가 있다. 전준기와 관련된 문서는 모두 官誥라는 특징이 있다.

3.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현황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중인집안 고문서는 2장에서 살펴본 인물들을 중심으로

金貞澤, 右道車學模, 慶尙左道洪建祖, 右道李秉輝, 全羅左道權明勳, 右道曺協承, 黃海道安宗洙, 江原道金一河, **咸鏡道全恒基**, 平安南道權相文, 北道金洛龜."

40) 『修堂集』 補遺 「乙未日記」 3월 26일 "晴. 府內民家失火, 延燒至二十二戶之多. 慘惻無喩, **視察委員[全恒基]入府.**"

41) 해당 문헌은 신연활자본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해당 문헌은 국한문혼용체에 맞춰 문장을 풀어낸 것이다. 해당 번역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병기, 2013 「『飮氷室自由書』의 국한문체 번역에 대하여」, 『어문론집』 54, 중앙어문학회 참조.

42) 『承政院日記』 1891년(고종 28) 4월 17일 "以洪(土+建)爲宣傳官, 李漢肯爲部將, **全學基爲訓戎僉使**.; 『內部來文』 1902년(광무 6) 10월 29일 內部參書官 具本淳 通牒: 官報의 揭載件을 左錄ᄒᆞ오며 奏本一度 謄本交送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爲要. 左開. 正三品 安處義 … 九品 林承根 … 尹昌植、柳相信、**全學基** … 命廣濟院事務委員."

43) 『承政院日記』 1887년(고종 24) 2월 25일 "兵批. … 同知單李濟榮, 加設單朴成彧 · 朴儀奭 · 李尙俊, 副司果張榮奎, 副司猛李容珪 · 宋寬熙 · 李鍾貴 · 金奎庠 · 李舜應, **副司勇玄憬運 · 全萬基** · 金宗煥 · 愼德晟 · 李庭珪."

44) 『承政院日記』 1895년(고종 32) 7월 30일 "又奏, **全晙基任宮內府參理官**, 金元濟任濟用院物品司長, 崔鶴圭任會計院出納司長 ….": 『承政院日記』 1895년(고종 32) 11월 13일 "又奏, 趙鼎九任王太子宮詹事, **姜元善 · 全晙基, 任宮內府通譯官**, 右謹上奏. 踏可字."

45) 국사편찬위원회, 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전준기 이력서 "1891년 6월 20일 入官立日語學校."

생산된 문서들이다. 해당 집안 고문서는 현재 199점이 확인된다. 이 중 토지매매를 통해 소장하게 되었을 舊文書를 제외하면 가장 이른 시기 발급된 문서는 1765년(영조 41) 한성부에서 전득구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며, 가장 늦은 시기 발급된 것은 全晙基와 그의 처 淑夫人 金氏에게 발급된 1895년(고종 32)의 官誥이다.

해당 문서를 공문서와 사문서로 분류하였을 때, 공문서는 준호구 41점, 호구단자 4점, 5품 이하 고신 1점, 관고 4점, 전령 1점, 녹표 1점 등이 있으며, 戶口類가 45점으로 가장 많다. 사문서는 구문서를 포함해 가옥 및 토지 매매 관련 문서 140점, 공인문서 5점, 분재기 2점으로 매매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매매 문서의 경우 중인집안 전래 문서에서는 보기 드문 자료라는 점과 중인의 경제 활동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종류별 현황과 비중을 간략히 정리한 표이다.

〈표 1〉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종류별 현황

공문서		사문서	
종류	수량(비중)	종류	수량(비중)
고신/관고	5점(2.51%)	매매문서	140점(70.35%)
전령	1점(0.50%)		
준호구/호구단자	45점(22.61%)	공인문서	5점(2.51%)
녹표	1점(0.50%)	분재기	2점(1.01%)
합계	52점(26.13%)	합계	147점(73.87%)

앞에 제시한 〈표 1〉을 살펴보면 공문서의 종류가 사문서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편이지만, 수량은 매매 관련 문서들이 많아 사문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해당 매매문서는 현재까지 여타 중인집안에서 보기 드문 자료이므로 전득구 집안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6] 다음은 50년 단위로 시기별 문서의 분포를 살펴

46)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매매문서의 비중이 높은 것은 대부분 원질서가 보존된 문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전득구 집안의 특징이라 보기 어려우며, 전득구 집안 고문서와 비교할 문서군이 있으면 의미 부각이 보다 잘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전득구 집안 고문서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은 박철민(2020ㄴ)에서 소개하였던 여러 중인집안 문서

본 것이다. 매매문서에는 전득구 집안에서 작성하지 않은 구문서도 존재하므로 구문서를 포함한 수치와 배제한 수치를 따로 제시하였다.

〈표 2〉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시기별 현황(左: 舊文書 포함, 右: 舊文書 미포함)

舊文書 포함		舊文書 미포함		비고
시기	문서 수량(비중)	시기	문서 수량(비중)	
1650~1700	14점(7.04%)	1650~1700	-	-
1701~1750	44점(22.11%)	1701~1750	-	-
1751~1800	91점(45.73%)	1751~1800	39점(45.88%)	구문서 제외 매매문서 24점. 시기: 1789~1800
1801~1850	31점(15.58%)	1800~1849	27점(31.76%)	구문서 제외 매매문서 3점. 시기: 1805~1811
1851~1900	19점(9.54%)	1850~1895	19점(22.35%)	관고 4점 등.
합계	199점	합계	85점	

시기별로 문서들을 살펴보았을 때 매매문서의 구문서들을 제외하더라도 1751년~1800년 사이에 분포한 문서들이 가장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득구 집안의 인물이 수급자로 나타나는 문서는 1789년부터 181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1800년 이전 작성된 것이다. 전체 27점 중 全主簿宅의 奴인 奇特이 수급자로 기재된 경우가 18점, 奴 福良이 수급자로 기재된 경우가 3점, 全興大가 수급자로 기재된 경우는 6건이다. 해당 문서들 중에서 奇特이 수급자로 기재된 문서가 많은데, 奇特이 수급자로 기재된 매매문서는 1790년(정조 14)부터 1800년(정

군들을 들 수 있다. 순흥안씨, 우봉김씨, 천령현씨 등의 집안 고문서는 원질서가 유지된 문서군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중인 집안의 고문서군 중 전득구 집안과 같이 토지 및 가옥 매매 문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량으로 남아있는 것은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본고에서 소개하는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매매문서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중인 집안 고문서 중 해당 집안의 특색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 알려진 중인 집안 고문서는 대개 중인의 官歷이나 가계와 관련된 준호구 등이 주목받아 왔다.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 매매문서는 중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조 24)까지이다. 이후 福良이 수급자로 기재된 문서가 출현하는 특징이 있다.

奇特과 福良의 이름만으로는 全興大 집안에서 사들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奴의 이름은 해당 집안 준호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奇特(1750~?)의 경우 1774년(영조 50) 전득구의 준호구에서는 奇特伊로 나타나나, 1789년(정조 13) 전흥대의 호구단자에서는 奇特으로 나타나며, 1801년(순조 1) 全興大의 준호구까지 확인된다. 福良(1772~?)은 1798년(정조 22) 전흥대의 준호구에서부터 나타나며 1831년(순조 31) 全孝顔의 준호구까지 확인된다.

奇特과 福良이 全興大 집안의 준호구에서 확인되며, 생존시기와 수급자로 기재된 매매문서의 발급시기가 겹치는 점, 奇特과 福良 이외 수급자로 확인되는 全興大가 惠民署主簿로 활동하였다는 점이 매매문서에서 확인되는 奇特과 福良의 소속인 全主簿宅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매매문서는 모두 전득구 가계의 문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흥대는 1808년 分財記에서 이미 사망하였다. 해당 매매문서들이 주로 전흥대의 활동시기와 겹치는 점을 보아 현전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는 주로 18세기 후반 전흥대가 활동하면서 형성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외에도 전득구 집안 고문서는 규장각 소장번호 중 특정 번호대에 뭉쳐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문서들을 소장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163280번대~166360번대에 걸쳐진 문서군, 168600번대에 위치한 문서군, 170590번대~170640번대, 178120번대~178130번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소장번호대에 문서군이 위치한 점과 해당 문서들이 모두 특정 집안에 전래되던 고문서라는 점은 박병호(1992ㄱ)에 수록된 張之兌의 증언과 같이 당시 고문서 상인들이 특정 가문과 지방의 문서를 일괄적으로 수집한 뒤 경성제국대학 소속 교수들에게 팔았던 것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단서로 볼 수 있다.

4. 문서의 종류별 특징

3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전득구 집안 문서들은 문서의 종류별로 어떠한 특

징이 있을까? 4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문서는 임명문서, 녹표, 호구류 등으로 구분하여 시기순으로 나열하되, 매매 관련 문서는 별도로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임명문서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에서 임명문서는 官誥 4점, 告身 1점, 傳令 1점이 존재한다. 官誥는 모두 1895년(고종 32) 발급된 것으로 全晙基와 妻 淑夫人 金氏에게 내려진 것이다. 살펴보면 淑人 金氏를 淑夫人에, 全晙基를 會計院金庫司長, 宮內府參理官, 宮內府通譯官에 임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한제국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임명문서의 서식은 1895년 제정[47]되었는데 해당 집안의 官誥는 당시 발행된 일반적인 官誥와 일치한다. 해당 문서는 관제가 개편되던 당시 중인집안 출신의 인물이 어떠한 관직을 역임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1895년 11월 전준기를 궁내부통역관, 주임관 3등에 임명하는 관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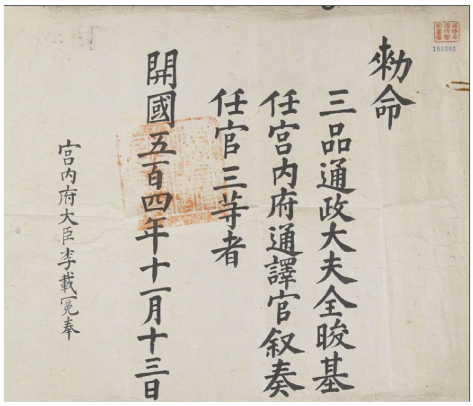
勅命
三品通政大夫全晙基
任宮內府通譯官叙奏
任官三等者
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三日
宮內府大臣李載冕奉

勅命
三品通政大夫全晙基、
任宮內府通譯官、叙奏
任官三等者。
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三日。
[施命之寶]
宮內府大臣李載冕奉。

〈그림 3〉 1895년(고종 32) 全晙基 官誥(소장번호: 183201)[48]

47) 김건우, 2006「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48) 이하 본고에서 활용한 전득구 집안 고문서 이미지는 모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에

告身은 1779년(정조 3) 全興大를 奮順副尉忠武衛司正에 임명한다는 5품 이하 고신이다. 傳令은 1846년(헌종 12) 全宅淳을 御營廳藥房에 差下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어영청의 약방은 『大典通編』에서 三軍門에 鍼房과 藥房을 각 1명씩 배치하여 병이 있는 군졸을 치료하도록 한다는 조문[49]이 있으므로 당시 全宅淳을 醫人으로 어영청에 차하시켰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어영청에서 약방에 차하를 위해 발급한 전령은 현재 해당 문서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50] 이상 살펴본 임명문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 임명문서의 서지사항

문서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주요내용	크기(cm)	소장번호
告身	1779년 (정조 3)	兵曹	全興大	全興大를 奮順副尉忠武衛司正에 임명.	72×53	178453-1
傳令	1846년 (헌종 12)	御營廳	全宅淳	全宅淳을 御營廳藥房에 差下시키는 내용.	68×36	178454
官誥	1895년 (고종 32)	國王	淑人 金氏	全晙基의 妻 淑人 金氏를 淑夫人에 봉함.	37×45	183204
官誥	1895년 (고종 32)	國王	全晙基	全晙基를 會計院金庫司長, 奏任官에 임명.	35×45	183203
官誥	1895년 (고종 32)	國王	全晙基	全晙基를 宮內府參理官, 奏任官 4等에 임명.	40×51	183202
官誥	1895년 (고종 32)	國王	全晙基	全晙基를 宮內府通譯官, 奏任官 3等에 임명.	40×47	183201

2) 祿標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에는 1779년(정조 3) 司正 全興大에게 米 13斗와 太 6斗

서 인용한 것이다.

49) 『大典通編』「兵典」救恤條 "【增】 三軍門置藥房[鍼·藥各一], 救療有病軍卒."

50) 필자가 확인한 사이트는 한국학자료센터,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이뮤지엄이다.

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祿標가 1점 포함되어 있다. 녹표는 호조에서 祿官에게 발급하던 것이므로 당시 司正이었던 전흥대가 祿官이었음을 알 수 있다. 司正은 정7품이며 1785년(정조 9) 편찬된『大典通編』에 정·종7품은 쌀 13斗, 黃豆 6斗를 지급한다는 조항[51]이 있으므로 전흥대는 당시 품직에 맞게 녹을 받은 것이다. 해당 문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祿標의 서지사항

문서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주요내용	크기(cm)	소장번호
祿標	1779년 (정조 3)	戶曹	全興大	全興大에게 科祿으로 米 13斗, 太 6斗를 지급한다는 내용.	21×38	178453-2

3) 準戶口와 戶口單子

중인 집안의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이미 다수 알려져 있으나, 全得龜 집안의 문서와 같이 다량이 남아있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특히 박철민(2020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개 호구류의 시기가 19세기인 반면, 전득구 집안의 호구류 문서들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걸쳐져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호구류 문서는 1765년(영조 41) 전득구의 준호구부터 1894년 전항기의 준호구까지 총 45점이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집안의 가계, 소유 노비, 거주지 등을 기재한 것이다. 이 중 수량이 많은 준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득구 집안의 소유 노비는 최초 1口였으나, 全興大가 司正을 지내는 시점부터 10口를 넘어섰으며, 全興大의 아들 孝曾과 孝顔代에 이르러서 40口를 넘었다. 이후 노비의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서의 형성 시기와 함께 당시 집안의 경제 상황을 보아 해당 집안은 전흥대와 그의 아들대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준호구에 기

51)『大典通編』「戶典」祿科條 "【每朔】【續】…【第十科正·從七品】米十三斗, 黃豆六斗.[已上二十七日]."

재된 거주지를 통해 초기 西部 皇華坊에 거주하던 해당 집안은 1770년 중후반 南部의 大平坊으로, 전흥대가 主簿가 되던 무렵에는 南部 廣通坊, 아들 孝曾과 孝顔에 이르러서는 中部 長通坊, 玄孫 全永默부터는 南部 薰陶防에 거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중인 집안의 거주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득구 집안은 『성원록』이나 여타의 족보 및 방목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집안이라는 점에서 가계와 혼맥을 파악하고, 매매문서의 노비가 해당 집안의 노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등 문서의 배경적 측면에서 해당 집안 호구류 문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호구류 문서는 수량이 많아 〈부록 2〉에서 전체 수량을 제시하고, 집안의 변화가 보이는 주요 준호구의 서지사항만을 표로 제시하도록 한다.

〈표 5〉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 주요 준호구의 서지사항

문서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주요내용	크기(cm)	소장번호
準戶口	1765년 (영조 41)	漢城府	全得龜	婢 1口. 거주: 西部 皇華坊.	59 × 46	170605
準戶口	1780년 (정조 4)	漢城府	全得龜	奴婢 11口. 거주: 南部 大平坊.	71 × 51	168615
準戶口	1792년 (정조 16)	漢城府	全興大	奴婢 22口. 거주:南部 廣通坊一里.	74 × 54	168638
準戶口	1798년 (정조 22)	漢城府	全興大	奴婢 35口. 거주:南部 廣通坊一里.	73 × 54	168637
準戶口	1816년 (순조 16)	漢城府	全孝曾	奴婢 43口. 거주:中部 長通坊.	77 × 55	168628
準戶口	1840년 (헌종 6)	漢城府	全孝顔	奴婢 46口. 거주:南部 大坪坊.	59 × 104	168610
準戶口	1846년 (헌종 12)	漢城府	全宅淳	奴婢 3口. 거주:南部 大坪坊.	55 × 71	170597
準戶口	1858년 (철종 9)	漢城府	全宅淳	奴婢 3口. 거주:中部 長通坊.	58 × 99	168620
準戶口	1867년 (고종 4)	漢城府	全永默	奴婢 2口. 거주:南部 薰陶坊.	56 × 73	168643
準戶口	1894년 (고종 31)	漢城府	全恒基	廊戶 4口. 거주:南部 薰陶坊.	54 × 89	168632

4) 分財記와 貢人文書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에는 공물의 권리 증명과 관계된 分財記 2점과 貢人文書 5점[52]이 존재한다. 공인문서는 해당 인물이 특정 貢人權의 권리 증명을 밝히는 문서인 반면, 분재기는 집안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문서로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두 문서는 모두 전득구 집안 소유의 공인권에 대한 문서로서 여기서는 함께 다루도록 한다.

分財記는 일찍이 이광규(1976: 89), 최승희(1989: 348)[53]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중인집안의 문서라는 것은 德成外志子(2002)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것이다. 德成外志子(2002)에서는 해당 분재기와 공인문서를 아울러 상세히 살펴보았다.[54]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 의지하여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 분재기는 2점이 확인된다. 두 문서는 모두 19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하나는 1808년 全興大가 사망한 뒤, 아들 孝曾, 孝閔, 孝顔과 딸에게 여러 공인권과 토지, 노비 등을 나누어준다는 내용이다. 발급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子女라는 표현과 未亡人, 家翁 등의 표현을 통해 전흥대의 처 高氏로 여겨진다. 해당 문서를 통해 전흥대 사망 직후 당시 전득구 집안 재산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

52) 德成外志子(2002: 124-125)에서는 전주전씨 공물문서의 목록을 정리하여 수록한 바 있다. 해당 표를 보면 奎121210은 都中에 포함된 全孝晩을 포함하였고, 수급자 중 全石과 全永, 全憲을 모두 全爾常의 후손인 全孝石, 全孝永, 全得憲으로 보았으며, 分財記 속에서 확인되는 각 인물의 공인권까지 포함하였다. 그러나 奎121210은 발급단체인 都中의 여러 사람 중 全孝晩이 포함되어 있고, 수급자인 全孝澈은 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득구 집안 고문서인지 알 수 없다. 또 全石과 全永 등의 인물이 해당 집안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 제시된 5점은 문서의 주인이 명확하게 전득구 집안 인물인 규장각 소장 고문서만을 제시한 것이다.

53) 이광규, 1976「朝鮮王朝時代의 財産相續」,『한국학보』2-2, 일지사; 최승희, 1989『(增補版)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필자는 최승희(1989)를 통해 이광규(1976)를, 德成外志子(2002: 119)를 통해 최승희(1989)에 전득구 집안 분재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54) 德成外志子(2002: 119)에서는 규장각 소장 178132 문서의 발급 시기를 1809년이라 제시하였으나, 실제 문서에서는 嘉慶13年이라 되어 있어 1808년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또 다른 분재기는 1812년(순조 12) 3월 6일 母 金氏가 次子 得龜에게 준 분재기이다. 해당 문서의 발급시기로 보았을 때, 다른 집안이라 여길 수 있으나, 문서에서 드러나는 孫子, 曾孫의 인명이 해당 집안과 일치하므로 전득구의 모친 貞夫人 慶州金氏가 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주김씨는 전득구의 부친 爾常(1716~1782)의 再室로 족보에서는 丁未年 태어나 壬申 4월 19일 사망하였다는 기록[55]이 있다. 爾常의 初室 開城朴氏의 생몰년이 1718년~1747년인 점, 문서의 발급자가 再室인 점, 爾常의 생몰년을 감안하였을 때 경주김씨의 생몰년은 1727년~1812년인 것을 알 수 있다. 경주김씨는 이 해 4월 사망하였으며, 분재기는 3월에 발급된 것이므로 경주김씨 사망 직전에 문서가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慶州金氏가 全得龜에게 발급한 분재기는 최승희(1989: 351)에서 추측한 바와 같이 각 자녀가 수급자로 기재된 같은 내용의 분재기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 중 전득구에게 발급된 분재기가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전득구 집안 전래 고문서가 규장각에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분재기의 내용 또한 여러 공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의 분재가 대부분이며, 당시 전득구 형제 집안에서 소유했던 재산의 일면을 볼 수 있다.

5점의 공인문서 중 2점은 全宅熹가 수·발급한 明文과 帖文이고, 3점은 全孝顔이 濟用監과 司僕寺의 貢房에서 발급받은 帖文들이다. 전택희가 발급한 문서는 1844년(헌종 10) 全宅熹가 八寸大父에게 全羅道, 慶尙道, 忠淸道, 黃海道, 江原道에 산재된 공물의 권리에 대하여 本文記 35장과 함께 방매한다는 내용의 명문으로 현전하는 전득구 집안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공인문서이다. 수급받은 帖文은 1860년(철종 11) 司僕寺 貢房에서 振威 穀草 1同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인데, [僕貢舊券勿施]라는 인문이 답인되어 있고, 본문은 爻周되어 있다. 인문과 효주가 되었기에 사복시에서 거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전득구 집안에서 후대에도 보관하였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인문서를 살펴본 이명종(2018: 65)[56]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朴權이라는 인물의 기존 권리문서를 司

55) 『全氏大同譜』 권6 66면 "爾常[字仲五. 肅宗丙申生. 嘉善大夫贈左尹. 正祖壬寅五月二十日卒. 墓貞夫人開城朴氏. 父左尹昌郁. 戊戌生. 丁卯六月十四日卒. 墓貞夫人慶州金氏. 父司勇德商. **丁未生. 壬申四月十七日卒**. 墓加佐洞先塋下庚坐. 三位合窆有碣.]"

巢寺大房에서 거둬 효주한 뒤 다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본 문서 또한 사복시에서 거둬 효주한 뒤 다시 전택희에게 돌려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해당 문서 또한 효주된 뒤 전득구 집안에서 소장하였을 것이다.

전효안에게 발급된 3점의 공인문서 중 첫번째는 1848년(헌종 14) 濟用監貢房에서 전효안에게 丁未年 統貢時 舊券을 爻周하고, 새로 帖文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嶺南 昌寧 등지의 공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850년 司僕寺貢房에서 振威 穀草 2同에 대한 권리가 전효안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帖文이다. 해당문서는 爻周되어 있다. 마지막은 1860년 사복시 공방에서 振威 1同 穀草에 대한 권리가 전효안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첩문이다. 해당 문서 또한 효주되어 있으며, [僕貢舊券勿施]라는 인문이 답인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바 공인문서는 대부분 효주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이명종(2018: 69-70)에서는 권리 문서의 축적 및 누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1840년대부터 1904년에 걸쳐 확인된다고 한다. 해당 문서들의 효주 또한 이 시기 공인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된 조처의 결과물일 것이다. 전득구 집안 고문서의 분재기 및 공인문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 분재기와 공인문서의 서지사항

문서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주요내용	크기(cm)	소장번호
分財記	1808년 (순조 8)	開城 高氏	全孝曾 등 4인	全興大의 자녀 全孝曾 등 3남 1녀에게 공인권과 토지, 노비 등을 나눠줌.	509×30	178132
分財記	1812년 (순조 12)	貞夫人 慶州金氏	全得龜	全爾常의 자손들에게 공인권과 토지를 나눠줌.	330×53	167250
貢人文書	1844년 (헌종 10)	全宅熹	八寸 大父	全羅道 南原官 등지의 공물권을 本文記 15장과 함께 방매하는 明文.	123×57	168662
貢人文書	1848년 (헌종 14)	濟用監貢房都中	全孝顔	濟用監貢案에 부기된 嶺南 昌寧 등지의 공물권을 증명함.	97×54	168657
貢人文書	1850년 (철종 원년)	司僕貢房 都中	全孝顔	振威 穀草 2同의 貢物權에 대한 증명.	53×54	168661

56) 이명종, 2018 「조선후기 貢人權 權原 증명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貢人文書	1860년 (철종 11)	司僕貢房 都中	全孝顔	振威 1同 穀草의 貢物權을 증명.	58×54	178127
貢人文書	1860년 (철종 11)	司僕貢房 都中	全宅熹	振威 穀草 1同의 貢物權을 증명.	52×54	178128

5) 토지 및 가옥 매매 관련 문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서는 토지 및 가옥 매매 관련 문서들이다. 해당 문서들은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약 130여 점이 확인된다. 이들 문서 중 실제 전득구 집안이 토지를 매득할 때 작성된 문서는 27점에 불과하며, 이외 나머지는 27점에 기재된 토지들의 구문서들이다. 해당 문서들이 구문서인 것은 토지의 負數, 四標가 표기된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 문서에 기재된 이전 소유자의 인명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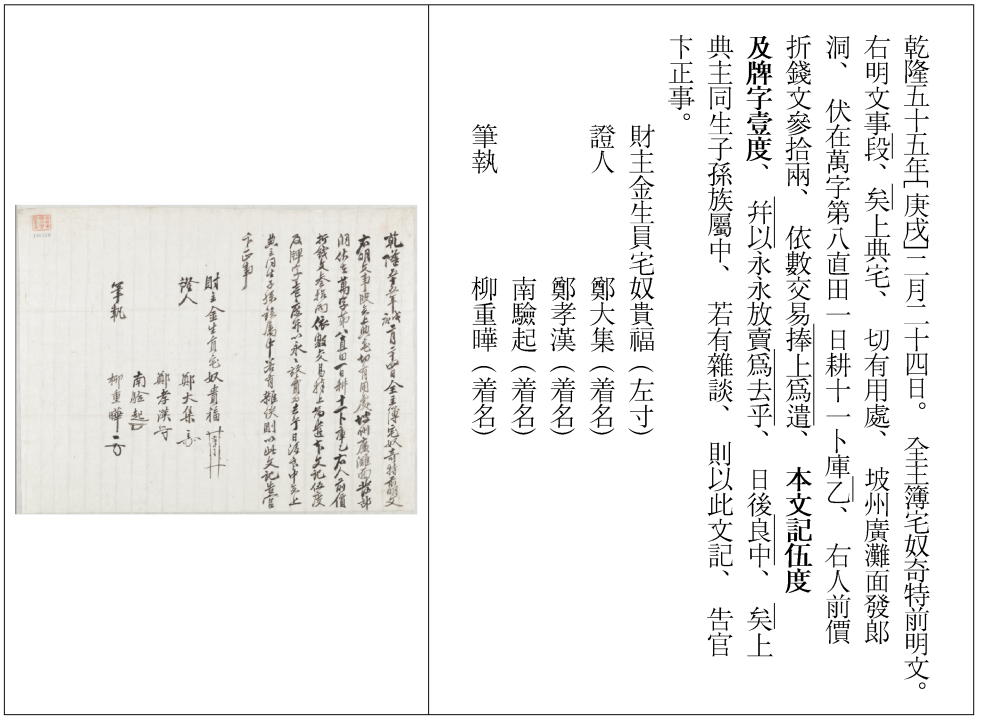

乾隆五十五年庚戌二月二十四日。全主簿宅奴奇特前明文。
右明文事段、矣上典宅、切有用處、坡州廣灘面發郎
洞、伏在萬字第八直田一日耕十一卜庫乙、右人前價
折錢文參拾兩、依數交易捧上爲遣、**本文記伍度**
及牌字壹度、并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矣上
典主同生子孫族屬中、若有雜談、則以此文記、告官
卞正事。
財主金生員宅奴貴福（左寸）
證人　鄭大集（着名）
　　鄭孝漢（着名）
　　南驗起（着名）
筆執　柳重曄（着名）

〈그림 4〉 1790년(정조 14) 全主簿宅의 토지 매매 문서(소장번호: 166330)

한 예로 위 〈그림 4〉의 문서를 살펴보자. 해당 문서는 1790년(정조 14) 全主簿宅에서 坡州 廣灘面 發郞洞에 소재한 밭을 金生員宅에서 매득할 당시 本文記 5장과 牌字 1장을 함께 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본문기와 패자는 위에서 제시한 문서와 별개의 문서로 財主인 金生員宅에서 매득한 문서를 포함하여 총 6장의 문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구문서의 추적 단서로는 동일한 전답 크기와 위치, 재주였던 김생원이다. 또, 1790년 당시 김생원댁에서는 奴貴福을 통해 거래하였으므로 貴福에게 주는 牌旨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경성제국시절 당시 고문서 유입이 특정 집안을 고문서상인이 일괄 수집하여 대학의 교수들에게 팔았다는 증언을 고려할 때 〈그림 4〉의 全主簿宅에서 매득한 토지 문서는 집안에서 보관하였을 구문서와 함께 규장각에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790년 金生員宅에서 奴貴福에게 준 牌旨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牌旨와 동일한 토지의 매매 기록이 있는 문서를 규장각 문서에서 추적하였다. 그 결과 다음에 제시하는 〈표 7〉과 같이 관련 문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표 7〉 1790년(정조 14) 全主簿宅 토지 매매 문서의 연계문서

문서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주요내용	소장번호	비고
買賣明文	1684년 (숙종 10)	士見	崔墨先	坡州 廣灘 發郞洞의 萬字 1日耕 11부를 20냥에 팔며, 本文記는 없음.	163360	本文記 1
買賣明文	1732년 (영조 8)	崔墨先長孫子蓋知	四寸兄金驗忠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萬字 1日耕 11부와 本文記 1장을 30냥에 팖.	163361	本文記 2
買賣明文	1747년 (영조 23)	金驗忠	朱德壽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萬字 1日耕 11부와 本文記 2장을 30냥에 팖.	166346	本文記 3
買賣明文	1767년 (영조 43)	朱德壽	南驗起	坡州 廣灘面 發郞洞里 萬字 1日耕과 本文記 3장을 30냥에 팖.	166347	本文記 4
買賣明文	1788년 (정조 12)	南驗起	金生員宅 奴貴福	坡州 廣灘面 發郞洞里 萬字 1日耕 11부와 本文記 4장을 30냥에 팖.	163287	本文記 5
牌旨	1790년 (정조 14)	上典金	金生員宅 奴貴福	坡州 廣灘面 發郞洞 萬字 1日耕 11부를 사기 원하는 사람에게 팔라는 내용.	163324	牌字 1

위 표에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坡州 廣灘面 發郞洞 萬字 소재 토지의 거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규모가 모두 동일하며, 시기가 올라갈수록 本文記의 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거래내역을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1684년(숙종 10) 士見이 崔墨先에게 팔면서 작성한 문서가 확인되는데, 당시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 기재되어 있어 許給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전득구 집안에서 해당 토지의 구문서로 유입된 문서 중 가장 오래된 문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정리하면 士見→崔墨先→(孫)蓋知→金驗忠→朱德壽→南驗起→金生員宅→全主簿宅이 되며, 1684년부터 1790년까지 약 100여 년의 토지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들은 1790년 매매문서 1장을 제외하면 買賣文書 5장, 牌旨 1장이 되므로 1790년 매매문서에서 확인되는 本文記의 수량과도 일치한다. 1790년 이후 다른 집에서 해당 토지를 매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규장각의 소장 문서 중 1790년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1790년 매매문서 및 6장의 관련 문서는 모두 전득구 집안에서 소장하던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1747년(영조 23) 朱德壽가 金驗忠에게서 매득한 매매문서(166346)의 背面에는 '토난니 남험긔쳐의 산 밧문셔. 발앙골밧. 발앙랑밋'과 같은 한글이 기재되어 있는데, '남험긔'라고 적혀있는 점으로 보아 1788년(정조 12) 南驗起가 金生員宅에게 판 이후부터 1790년 全主簿宅에 다시 팔기 이전 사이에 작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문서와 같이 한글의 작성 시점을 알 수 있다면 '남험긔'를 '南驗起'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한자음을 유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득구 집안에서 매매한 토지와 연관 문서를 정리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전득구 집안 매매문서와 관련문서[57]

전득구 집안 매매문서(발급년도)	토지, 가옥 소재지	매매 당시 구문서	구문서의 규장각 소장번호 (발급년도)
163298(1789)	坡州 廣灘面 發郎洞	본문기 3장 (마지막은 배탈)	163292(1715) / 163293(1717) 163291,166331(牌旨, 1745) 166352(1759) *다 있음.
166330(1790) 163324(牌旨)	坡州 廣灘面 發郎洞	본문기 5장, 牌旨 1장	163360(1684) / 163361(1732) 166346(1747) / 166347(1767) 163287(1788) *다 있음.
166296(1790)	坡州 廣灘面 發郎洞	본문기 5장, 牌旨 1장	163393-2(1700) / 163373(1718) 163291, 166331(牌旨, 1745) 166352(1759) / 166332(1788) *다 있음.
163297(1790)	坡州 廣灘面 發郎洞	본문기 3장, 牌旨 1장	163300(1719) / 163299(牌旨 포함, 1733) / 166352(1759) *다 있음.
163337(1791) 163338(牌旨)	坡州 廣灘面 高谷里	본문기 3장, 牌旨 3장	163340(牌旨 포함, 1777) / 163339(1782) *본문기 1장, 牌旨 1장 부족
166362(1791) 166360(牌旨)	坡州 廣灘面 狗坪	본문기 2장, 牌旨 2장	166349, 166329(牌旨)(1761) / 166363(1779) *다 있음.
163313(1791)	坡州 廣灘面 發郎洞	본문기 3장, 立旨 1장, 所志 1장	163396(所志, 立旨, 1732) / 163302(1741) *본문기 1장 부족.
166348(1792) 166325(牌旨)	坡州 廣灘面 五加洞	본문기 9장, 牌旨 3장	구문서 모두 확인 안 됨.
163368(1792)	坡州 廣灘面 狗坪, 都馬山	없음.	원래 구문서 없음.
163369(1793)	坡州 廣灘面 發郎洞	없음.	원래 구문서 없음.
163379(1793)	坡州 廣灘面 梧山里	본문기 1장, 牌旨 1장	166350(1756) *牌旨 1장 부족.
163330(1794)	坡州 廣灘面 刀馬山	본문기 6장, 牌旨 2장	163385(1687) / 163328(1704) / 163342(1737) / 163332(1747) / 163329(1763) / 163343, 163344(牌旨, 1773) / 163331(牌旨, 1794) *다 있음.
166298(1794)	坡州 廣灘面 土卵里	본문기 3장, 牌旨 2장	163334(牌旨 포함, 1671) / 163341(1713) / 166297(1787) *1713년 牌旨 1장 부족.
163316(1794)	坡州 廣灘面 梧加洞	본문기 1장	163317(1737) *다 있음.

166312(1794)	坡州 廣灘面 狗坪, 土卵里	본문기 16장	a: 163366(牌旨 포함, 1691) / 163392-2(1698) / 163349(1711) / 163305(1731) / 163304(1779) b: 166308(1724) / 166309(1727) / 163395-4(1727) / 163395-2(1746) / 163306(1778) / 163307(1782) / 166311(1786) *본문기 포함 3장 부족
163325(1794) 163315(牌旨)	坡州 廣灘面 高谷里	본문기 9장, 牌旨 3장	a: 163322(1700) / 163323(1712) / 163319(1718) / 163318(1729) / 163320(1743) / 163321(1749) b: 163327(1733) / 163326(1778) c: 166361, 168743(牌旨, 1733) *牌旨 1장 부족.
166344(1794) 166343(牌旨)	坡州 廣灘面 都馬山, 山多會	본문기 2장, 牌旨 2장	a: 166345, 166342(牌旨, 1792) *山多會 문서는 후대 放賣. *다 있음.
163290(1794) 168744(牌旨)	坡州 廣灘面 都馬山	본문기 1장, 牌旨 2장	163295, 163296(牌旨,1792) *다 있음.
166351(1795)	坡州 廣灘面 發郎洞, 狗坪, 梧山里	본문기 58장	發朗洞 方字: 166327(1729) 萬字 17, 19: 163314(1724) 45: 163371(1719) / 163372(1731) 48: 166358(1698) / 163286(1718) 狗坪 食字: 163335(1674)->163387(1694) *8장 외 확인 불가.
163352(1797) 163289(牌旨)	坡州 廣灘面 土卵里	본문기 3장, 牌旨 2장, 立旨 1장	163350, 163354(立旨), 163288(牌旨, 1785) / 163351(1786) *본문기 1장 부족.
166295(1797) 166303(牌旨)	坡州 廣灘面 發郎洞	본문기 3장, 不忘記 2장, 牌旨 2장	163382, 163380(不忘記1), 163381(不忘記2, 이상 1751) / 163383(1758) *牌旨 1장 부족.
163362(1798)	交河 衙洞面 衙洞里	본문기 2장, 牌旨 1장	163357, 163356(牌旨, 1698) / 163363(1733) *다 있음.
163283(1799) 163359(牌旨)	坡州 廣灘面 發郎洞	원래 없음	원래 없음
166294(1800) 166340(牌旨)	坡州 廣灘面 社倉里	본문기 3장, 牌旨 2장	163376, 163375(牌旨, 1798) *본문기 2장 부족

166339(1805)	坡州 廣灘面 馬場里	본문기 4장, 牌旨 1장	166292, 168818(牌旨, 1775) / 166302(1779) / 166338(1782) / 166293(1789) *다 있음.
166326(1805)	坡州 廣灘面 分土洞	본문기 5장, 牌旨 2장	166323, 166322(牌旨, 1733) / 166318(1742) / 166319(1750) / 166317(1761) / 166320, 166359(牌旨, 1804) *다 있음.
166316(1811)	坡州 廣灘面 狗坪畓	본문기 2장, 牌旨 3장	현재 확인 안 됨.

앞의 표를 살펴보면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 중 토지 및 가옥 매매의 구문서 대부분이 동일 기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해당 문서들이 전득구 집안에서 소유하였던 모든 토지와 가옥의 문서들은 아닐 것이다. 필요에 따라 팔았던 토지의 문서들은 자연스레 매득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 외에도 全興大, 全孝曾에 의해 매득된 토지들은 더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필자가 표로 제시한 문서들이 혹 전득구 집안에서 토지를 매득한 다른 집안의 문서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우연히 규장각에 소장된 것이 겹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규장각 소장 문서 중 전득구 집안의 토지를 買得한 문서는 보이지 않는 점, 1792년(정조 16) 買得한 166348 문서 背面에서 1886년(고종 23) 일부 토지와 구문서 2장을 康僉知에게 팔았다는 내용은 있으나 康僉知가 매득하였던 문서는 규장각 소장 문서 중에서 보이지 않는 점을 보아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서들은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전득구 집안에서 소유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위 문서의 특징으로는 전득구 집안이 대개 坡州 廣灘面에 소재한 토지와 가옥을 집중적으로 매득하였다는 점이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경기도

57) 본 표는 현전하는 전득구 집안 전체의 토지 및 가옥 매매문서와 구문서를 연계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표에는 문서별 규장각 소장번호, 발급시기, 매매 대상 토지, 당시 전득구 집안에서 입수한 구문서의 수량 등을 간략히 기재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문서 중 여러 토지를 아울러 매매한 경우 a, b로 구분하였으며, 163352 문서의 경우 너무 많은 토지와 문서가 얽혀있어 字號와 전답의 순서를 숫자로 표현해 제시하였다.

고양시에 소재한 牛峯金氏 중인집안의 묘역, 경기도 포천과 현 남양주 별내면에 소재했던 川寧玄氏 중인집안의 묘역[58], 현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에 소재했던 昇平康氏 중인집안의 묘역[59] 등 醫官과 譯官 등으로 활동한 중인집안의 先塋이 현재의 경기도 북부에 다수 소재하였던 점으로 보아 전득구 집안은 경기도 파주 광탄면 일대를 선영 내지 생활터전으로 삼기 위하여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소장 고문서 중 全州全氏 中人집안의 한 일원인 全得龜 집안 고문서 199점을 살펴보았다. 전주전씨는 고려말 활동한 全濮이 中始祖인 집안이며, 전주전씨 중인집안은 16세기 말~17세기 초 무렵 혼맥을 통해 중인집안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해당 집안에서는 17세기 중반 譯官을 배출한 뒤 반세기 정도를 武班職으로 활동한 뒤 寧國原從功臣 1等에 녹훈된 全天柱의 玄孫代에 이르러 司譯院 및 惠民署 등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玄孫인 全爾常의 후손 가계에서 18세기 이후 잡과 배출이 두드러진다.

현전하는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문서에서 上代의 인물은 全爾常의 次男인 全得龜로,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중인집안의 문서는 내용을 보아 전득구 집안에서 19세기 말까지 소장하였던 것이다. 해당 문서는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라는 인문과 박병호(1992ㄴ)에 수록된 張之兌의 증언을 감안하였을 때, 일제강점기 어느 시점에 고문서상에 의해 일괄 수집되어 京城帝國大學에 팔린 뒤 현재 규장각에 전해지

58) 해당 집안의 묘소 위치는 연주현씨대동보편찬위원회, 2001『延州玄氏大同譜』, 회상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59) 해당 집안의 묘소는 강용식, 2000『인생은 짧지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많다』, 미래지성에서 확인하였다. 저자 강용식은 醫官 康命吉을 배출한 승평강씨 중인집안 출신인 康晉昌의 玄孫이다.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득구 집안은『姓源錄』이나 족보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雜科入格者 또한 배출되지 않아 방목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집안이다. 그러나 이들은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통해 惠民署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인 집안임이 명확하며, 貢人權을 다수 지닌 집안이었다. 이들이 소유했던 貢人權은 分財記와 貢人文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집안 고문서 중 공문서는 告身과 官誥가 5점, 傳令 1점, 準戶口와 戶口單子 45점, 祿標 1점으로 총 52점이며, 사문서는 토지 및 가옥 매매 관련 문서 140점, 공인문서 5점, 분재기 2점으로 총 147점으로 토지 및 가옥 매매 관련 문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토지, 가옥 매매 관련 문서 140점 중 실제 전득구 집안에서 거래를 하며 작성한 문서는 27점으로 이외 113점은 27점의 문서에 대한 牌旨와 舊文書 등 관련 문서들이다.

전득구 집안 고문서는 전득구의 장남 전흥대가 활동한 18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전흥대와 그의 아들대에 坡州 廣灘面 일대 소재 토지 및 가옥을 다수 매득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중인의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외에도 대한제국 이행기에 발급된 官誥로 해당 시기 중인집안 출신자의 활동을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의 주거지, 혼맥 등은 準戶口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 살펴본바 규장각의 고문서 중 199점이 특정 집안의 문서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고문서는 5만여 점이 넘는다. 그러나 해당 문서들은 주로 京城帝國大學 시절 수집되었는데, 어떠한 문서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헌학적 관점에서 각 문서간의 내용적 연계성을 확인하고 계보학적 측면에서 특정 집안의 고문서였었음을 밝히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연원과 각 문서 간 연계성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

논문투고일(2021. 4. 19),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9)

참고문헌

원전(편찬시기 순)

『承政院日記』.
『寧國原從功臣錄券』.
『大典通編』.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
〈烏石製全興大誌石〉(국립중앙박물관, 소장번호:신수 7231).
『姓源錄』.
국사편찬위원회, 『大韓帝國官員履歷書』, 1972.
『修堂集』.
全氏中央宗親會, 『全氏大同譜』, 大譜社, 1991.
연주현씨대동보편찬위원회, 『延州玄氏大同譜』, 회상사, 2001.

논저

강용식, 2000 『인생은 짧지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많다』, 미래지성.
김건우, 2006 「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두헌, 2004 「자료 『增補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대동사학회.
_____, 2010 「『姓源錄』을 통해서 본 서울 중인 가계 연구」, 『서울학연구』 3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김진근, 2015 『한민족 성씨의 역사』, 보문서원.
노인환, 2013 「조선후기 敎書의 발급 과정 연구」,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德成外志子, 2002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병호, 1992ㄱ 「고문서 자료의 수집 · 정리문제」, 『정신문화연구』 15권 4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_____, 1992ㄴ 「奎章閣所藏 古文書와 그 性格」, 『민족문화논총』 13.
박성호, 2020 「환수된 대군주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 13, 국립고궁박물관.
박종근, 2019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머문 35년의 흔적』, 도서출판 해남.

박철민, 2020ㄱ 「조선 전기 改名牒과 조선시대 개명첩 양식의 변화」, 『규장각』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20ㄴ 「19세기 서울 順興安氏 中人집안 전래 고문서 고찰」,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양진석, 2005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규장각』 2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0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 조사 정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_____, 2009 「한국 고문서학의 전개과정」, 『규장각』 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광규, 1976 「朝鮮王朝時代의 財産相續」, 『한국학보』 2-2, 일지사.
이명종, 2018 「조선후기 貢人權 權原 증명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이병기, 2013 「『飮氷室自由書』의 국한문체 번역에 대하여」, 『어문론집』 54, 중앙어문학회.
전경목, 2016 「조선후기 학동들의 탄원서 학습」, 『전북사학』 49.
최승희, 1989 『(增補版)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한영우, 1997 「규장각자료의 정리와 활용」, 『국사관논총』 73,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가나다순)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이뮤지엄(http://www.emuseum.go.kr/main).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https://genealogy.inje.ac.kr/)
코베이(http://www.kobay.co.kr/kobay/index.do).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Abstract

A Study on Old Documents of Jeonju Jeon Clan Jung-in Family, Held by Kyujanggak

– Focusing on Lineage of Jeon Deukgu (1740~?) –

Park, Cheol-Min *

This paper examined the old documents of the Jeon Deukgu family, held by Kyujangga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eon Deukgu family, a member of the Jeonju Jeon clan Jung-in family, is the second son's family of Jeon Isang, which primarily produced Japgwa after the 18th century. Among the documents held by Kyujanggak, at least 199 pieces of old documents belonging to the family were found, which were once preserved by not only Jeon Deukgu, but also his descendants.

The family's old documents were mainly formed in the period in which Jeon Heungdae, the first son of Jeon Deukgu was active, and kept by the family until the 19th century and might be sold by a bookstore dedicated to old documents to Keijo Imperial Univers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ocuments had been created across periods ranging from the mid-18th century to the late-19th century. They include documents for appointment, such as Gosin (告身) and Gwan-go (官誥), as well as Gong-in Documents (貢人文書) and contract documents about real-estate and houses.

In particular, the contract documents about real-estate and houses account for a larger portion of them, because of the higher portion of sales notes of the prior owners (舊文書). This paper attempted to arrange the relations among documents, by discovering documents related to those about real-estate and houses that the Jeon Deukgu's family had possessed until the 19th century, and then represented them in the form of a table. The

* Ph.D. Candidat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ajor in Paleography.

contract documents about real-estate and houses, belonging to the Jeon Deukgu's family are valuable, in the they represent Jung-in's economic activity.

Key words : Jung-in (中人), old documents (古文書), Medical Officer (醫官), real-estate contract (土地買賣), house contract (家屋買賣), economic activity (經濟活動)

〈부록 1〉 전주전씨 중인집안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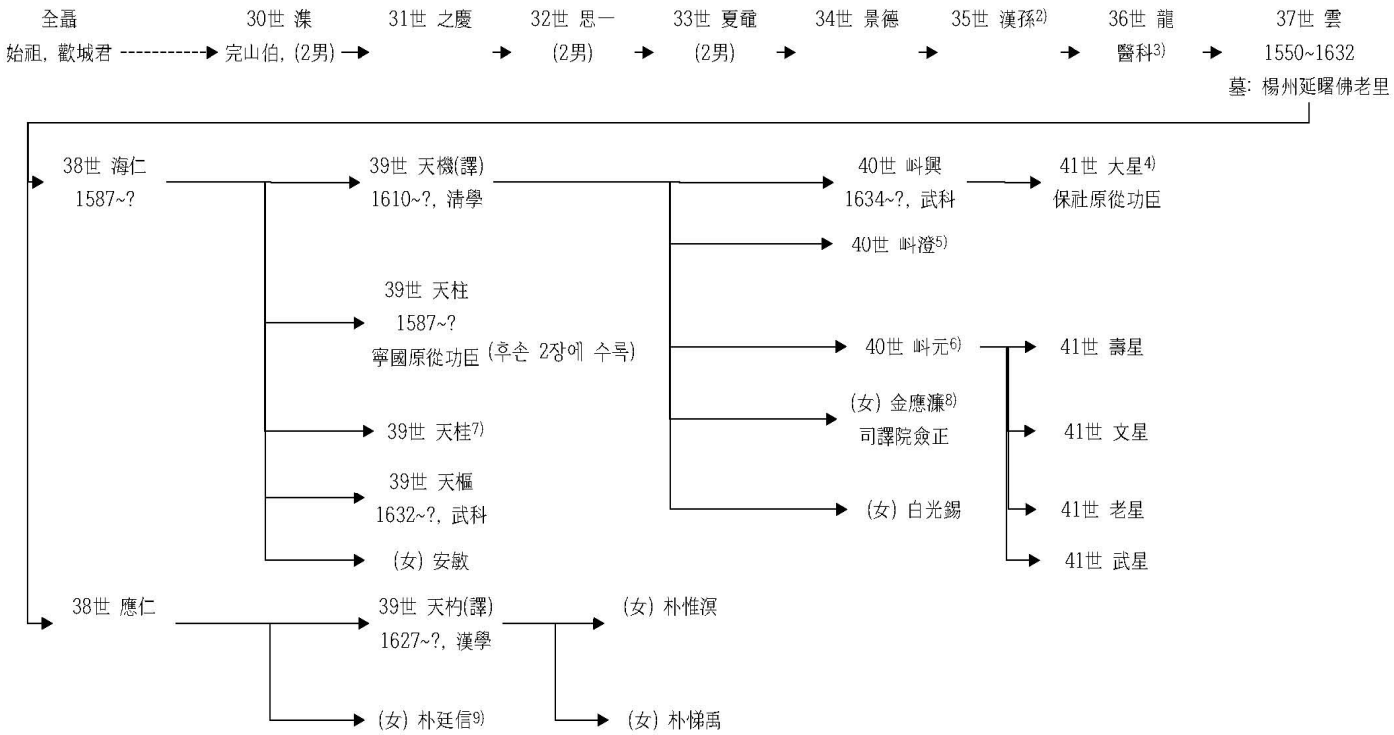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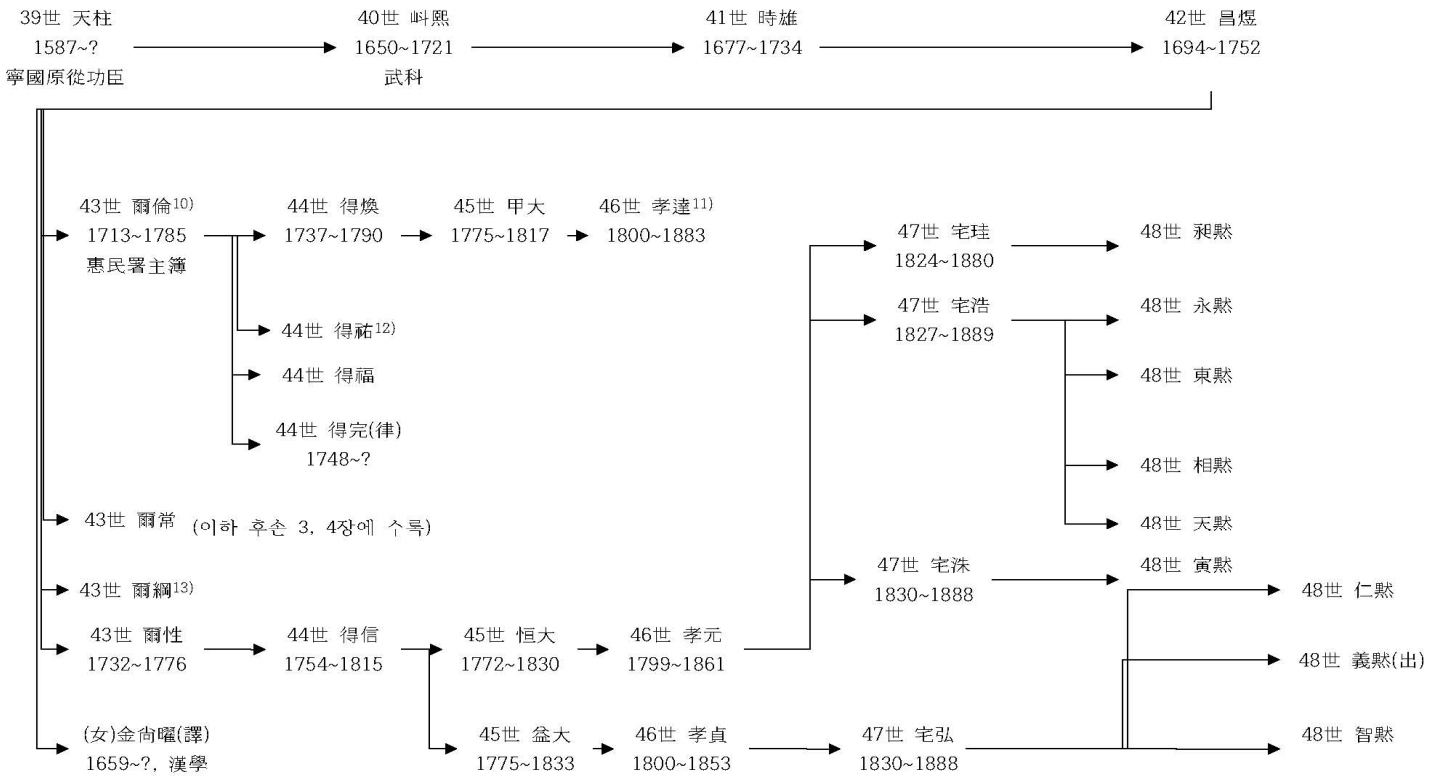
39世 天柱
1587~?
寧國原從功臣
40世 岼熙
1650~1721
武科
41世 時雄
1677~1734
42世 昌煜
1694~1752
43世 爾倫10)
1713~1785
惠民署主簿
44世 得煥
1737~1790
45世 甲大
1775~1817
46世 孝達11)
1800~1883
44世 得祐12)
44世 得福
44世 得完(律)
1748~?
43世 爾常 (이하 후손 3, 4장에 수록)
43世 爾綱13)
43世 爾性
1732~1776
44世 得信
1754~1815
45世 恒大
1772~1830
46世 孝元
1799~1861
45世 益大
1775~1833
46世 孝貞
1800~1853
(女)金尙曜(譯)
1659~?, 漢學
47世 宅珪
1824~1880
47世 宅浩
1827~1889
47世 宅洙
1830~1888
47世 宅弘
1830~1888
48世 昶默
48世 永默
48世 東默
48世 相默
48世 天默
48世 寅默
48世 仁默
48世 義默(出)
48世 智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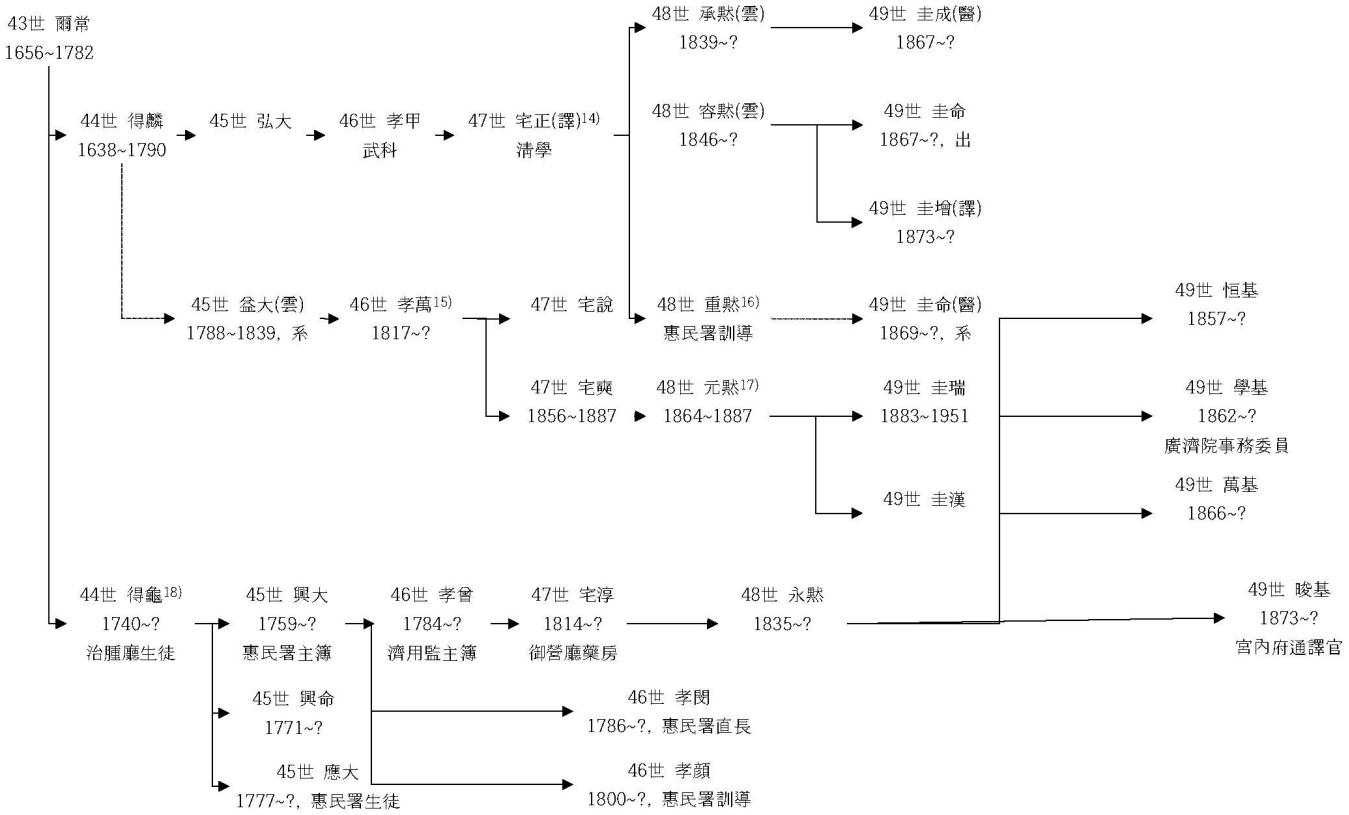
43世 爾常
1656~1782
44世 得麟
1638~1790
45世 弘大
46世 孝甲
武科
47世 宅正(譯)14)
清學
48世 承默(雲)
1839~?
49世 圭成(醫)
1867~?
48世 容默(雲)
1846~?
49世 圭命
1867~?, 出
49世 圭增(譯)
1873~?
45世 益大(雲)
1788~1839, 系
46世 孝萬15)
1817~?
47世 宅說
48世 重默16)
惠民署訓導
49世 圭命(醫)
1869~?, 系
49世 恒基
1857~?
47世 宅奭
1856~1887
48世 元默17)
1864~1887
49世 圭瑞
1883~1951
49世 學基
1862~?
廣濟院事務委員
49世 圭漢
49世 萬基
1866~?
44世 得龜18)
1740~?
治腫廳生徒
45世 興大
1759~?
惠民署主簿
46世 孝曾
1784~?
濟用監主簿
47世 宅淳
1814~?
御營廳藥房
48世 永默
1835~?
49世 晙基
1873~?
宮內府通譯官
45世 興命
1771~?
46世 孝閔
1786~?, 惠民署直長
45世 應大
1777~?, 惠民署生徒
46世 孝顔
1800~?, 惠民署訓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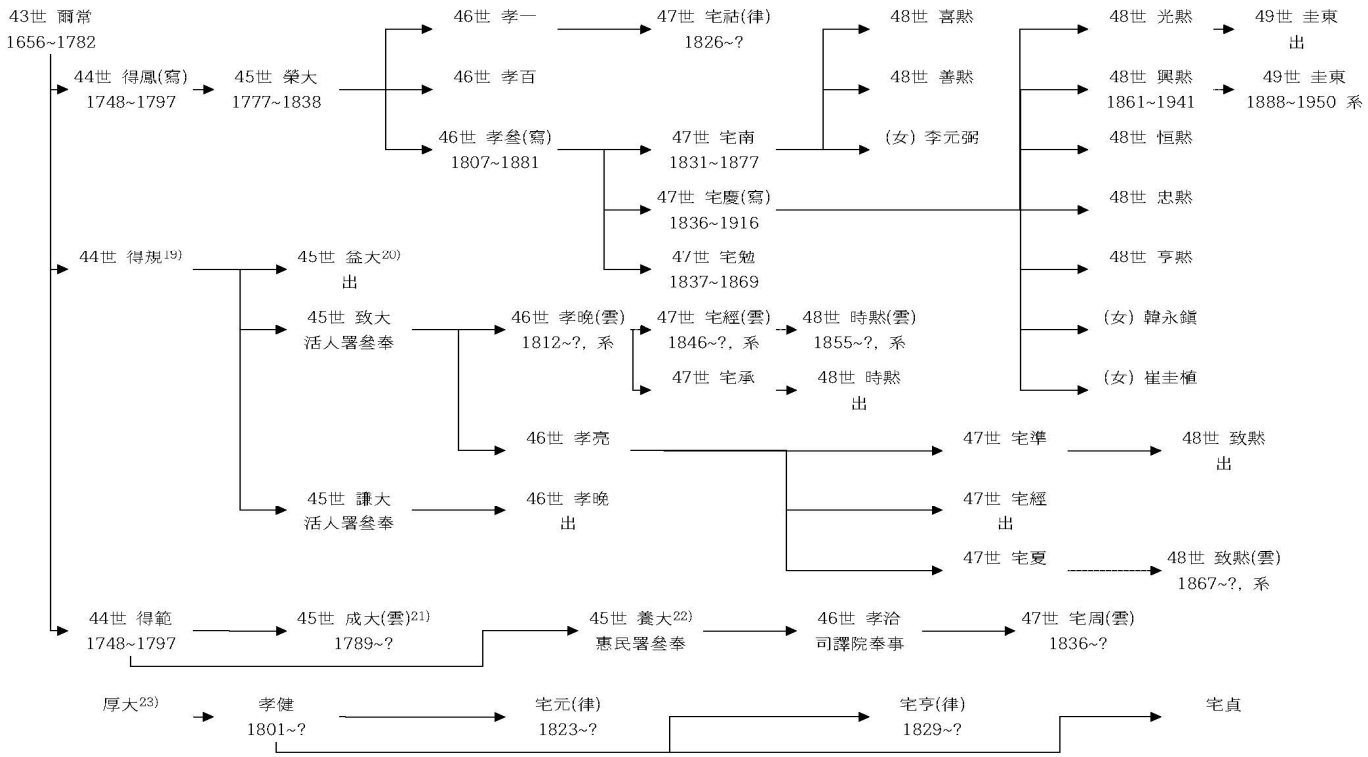
43世 爾常
1656~1782
44世 得鳳(寫)
1748~1797
45世 榮大
1777~1838
46世 孝一
46世 孝百
46世 孝叅(寫)
1807~1881
47世 宅祜(律)
1826~?
47世 宅南
1831~1877
47世 宅慶(寫)
1836~1916
47世 宅勉
1837~1869
48世 喜默
48世 善默
(女) 李元弼
48世 光默
48世 興默
1861~1941
48世 恒默
48世 忠默
48世 亨默
(女) 韓永鎭
(女) 崔圭植
49世 圭東
出
49世 圭東
1888~1950 系
44世 得規19)
45世 益大20)
出
45世 致大
活人署叅奉
46世 孝晩(雲)
1812~?, 系
47世 宅經(雲)
1846~?, 系
48世 時默(雲)
1855~?, 系
47世 宅承
48世 時默
出
46世 孝亮
47世 宅準
48世 致默
出
47世 宅經
出
47世 宅夏
48世 致默(雲)
1867~?, 系
45世 謙大
活人署叅奉
46世 孝晩
出
44世 得範
1748~1797
45世 成大(雲)21)
1789~?
45世 養大22)
惠民署叅奉
46世 孝洽
司譯院奉事
47世 宅周(雲)
1836~?
厚大23)
孝健
1801~?
宅元(律)
1823~?
宅亨(律)
1829~?
宅貞

1) 해당 가계도는『전씨대동보』와『성원록』, 방목, 규장각 소장 전득구 집안 고문서를 활용하여 譯官, 醫官 등을 배출한 가계만 작성한 것이다. 본 가계도에 수록되는 인물은 1910년 이전 출생한 인물 중 잡과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에 속한 인물이다. 단, 아들대에 묘소가 옮겨지는 등 이후 잡과 입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각주로 설명을 부기해 두었다. 생몰년 미상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次男 이하인 경우 2男, 3男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장남과 외동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잡과 입격자는 譯(역과), 醫(의과), 雲(음양과) 등으로 표기하되, 미입격자라도 잡과 관련 기관 소속의 직책이 확인될 경우 표기하였다. 寫字官의 경우 (寫)로 표기하였다. 全州全氏이면서 中人으로 활동한 인물 중 계보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사위는 (女)로 표기하며, 외손 중 잡과 입격자가 있을 경우 사위의 이름에 각주를 달아 외손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完山伯 全濮 이후 자손 중 親子는 직선, 繼子는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2)『성원록』에서는 해당 인물부터 기재되어 있다.

3) 해당 인물은『姓源錄』에서 石陵君, 醫科 등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石陵君이 동명이인인 점을 보아 의과 입격 정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우선『성원록』에 따라 기재해 둔다.

4) 해당 인물대에 서울에서 영남으로 이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자손들의 묘소는 密陽郡에 소재한다.

5) 해당 인물은『성원록』에서만 이름이 확인된다.

6) 해당 인물과 아들은『성원록』에서만 이름이 확인된다. 이후 후손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7)『전씨대동보』에서는 해당 인물이 寧國功臣이나, 실제 錄券을 살펴보면 天柱가 寧國原從功臣이다. 해당 가계도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天柱만 寧國功臣으로 기재하였다.

8) 慶州金氏. 아들로 金是樑(1664~?, 倭學譯官), 金是桓, 金是權(1684~?, 漢學譯官)이 있다.

9) 密陽人. 아들로 朴世亮(1650~?, 倭學譯官), 朴世章(1653~?, 漢學譯官)이 있다.

10)『성원록』에는 해당 인물까지만 확인되며, 이후 해당인물의 자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 이하 후손의 묘소가 장성에 위치하며, 잡과 배출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孝達 이후부터는 세거지를 완전히 옮겼으리라 여겨진다.

12) 해당 인물 및 동생들은 모두 방목에서만 확인된다. 족보와『성원록』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 족보에서는 자손이 확인되지 않는다.
14) 해당 인물은 방목에서 입격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나, 『承政院日記』 1880년(고종 17) 6월 26일 기사에서 淸學堂下譯官으로 나타난다.
15) 해당 인물의 몰년은 哲宗丁丑年으로 족보에 제시되어 있으나, 철종 재위 기간 정축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16) 해당 인물은 아들 圭命의 방목에서만 확인되는 인물로, 생몰년을 알 수 없어 서열이 확인되지 않는다.
17) 해당 인물의 생년과 부친의 생년은 8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생년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족보에서는 高宗甲子生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18) 이하 후손의 가계는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19) 해당 인물은 益大의 방목에서만 확인된다.
20) 해당 인물의 형제 서열은 알 수 없다. 이하 후손들의 서열 또한 같다.
21) 방목에서는 成淳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改名 이전의 이름이며, 改名은 成大로 하였다.
22) 해당 인물의 생년을 알 수 없어 형제간의 서열은 확인할 수 없다.
23) 해당 인물의 先代는 알 수 없으나, 규장각 소장 1812년(순조 12) 全爾常의 妻 慶州金氏 分財記(167250)에서 전이상의 從孫으로 나온다.

〈부록 2〉 규장각 소장 전주전씨 중인집안 고문서 목록[24]

순번	문서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주요내용	소장번호	비고
1	告身	1779년(정조 3)	兵曹	全興大	全興大를 奮順副尉忠武衛司正에 임명.	178453-1	
2	官誥	1895년(고종 32)	國王	淑人 金氏	全晙基의 妻 淑人 金氏를 淑夫人에 봉함.	183204	3월 발급.
3	官誥	1895년(고종 32)	國王	全晙基	全晙基를 會計院金庫司長, 奏任官에 임명.	183203	4월 발급.
4	官誥	1895년(고종 32)	國王	全晙基	全晙基를 宮內府參理官, 奏任官 4等에 임명.	183202	6월 9일 발급.
5	官誥	1895년(고종 32)	國王	全晙基	全晙基를 宮內府通譯官, 奏任官 3等에 임명.	183201	11월 3일 발급.
6	傳令	1846년(헌종 12)	御營廳	全宅淳	全宅淳을 御營廳藥房에 差下.	178454	
7	祿牌	1779년(정조 3)	戶曹	全興大	全興大에게 科祿으로 米 13斗, 太 6斗를 지급.	178453-2	
8	準戶口	1765년(영조 41)	漢城府	全得龜	거주: 西部 皇華坊 刀子洞契. 婢 1口.	170605	
9	準戶口	1768년(영조 44)	漢城府	全得龜	거주: 西部 皇華坊 刀子洞契. 奴婢 3口.	168617	
10	準戶口	1771년(영조 47)	漢城府	全得龜	거주: 西部 皇華坊 刀子洞契. 奴婢 5口.	178474	
11	準戶口	1774년(영조 50)	漢城府	全得龜	거주: 西部 皇華坊 刀子洞契. 奴婢 7口.	168614	
12	準戶口	1780년(정조 4)	漢城府	全得龜	거주: 南部 大平坊 善山契. 奴婢 11口.	168615	
13	準戶口	1783년(정조 7)	漢城府	全得龜	거주: 南部 大平坊 善山契. 奴婢 13口.	168624	
14	準戶口	1792년(정조 16)	漢城府	全興大	거주: 南部 廣通坊 一里大多坊 北邊契. 奴婢 22口.	168638	*노비 수 증가
15	準戶口	1798년(정조 22)	漢城府	全興大	거주: 南部 廣通坊 一里大多坊 北邊契. 奴婢 35口.	168637	
16	準戶口	1801년(순조 1)	漢城府	全興大	거주: 南部 廣通坊 一里大多坊 北邊契. 奴婢 36口.	168636	
17	準戶口	1807년(순조 7)	漢城府	全孝曾	거주: 南部 廣通坊一里 大多坊 北邊契. 奴婢 36口.	168613	
18	準戶口	1813년(순조 13)	漢城府	全孝閔 妻 朴氏	거주: 中部 長通坊 淸州京主人契. 奴婢 3口.	168640	
19	準戶口	1816년(순조 16)	漢城府	全孝曾	거주: 中部 長通坊 貫子洞契. 奴婢 43口.	168628	

20	準戶口	1819년(순조 19)	漢城府	全孝閔 妻 朴氏	거주: 中部 長通坊 朴己守契. 奴婢 5口.	168639	
21	準戶口	1822년(순조 22)	漢城府	全孝顔	거주: 中部 長通坊 朴己守契. 奴婢 40口.	168612	
22	準戶口	1822년(순조 22)	漢城府	全孝閔 妻 朴氏	거주: 中部 長通坊 朴己守. 奴婢 6口.	168642	
23	準戶口	1825년(순조 25)	漢城府	全孝顔	거주: 中部 長通坊 朴己守契. 奴婢 40口.	168609	
24	準戶口	1828년(순조 28)	漢城府	全孝閔 妻 朴氏	거주: 中部 長通坊 朴己守契. 奴婢 6口.	170608	
25	準戶口	1831년(순조 31)	漢城府	全孝顔	거주: 中部 長通坊 貫子洞契. 奴婢 40口.	168611	
26	準戶口	1834년(순조 34)	漢城府	全孝閔 妻 朴氏	거주: 中部 長通坊 貫子洞契. 奴婢 6口.	168618	
27	準戶口	1834년(순조 34)	漢城府	全孝顔	거주: 中部 長通坊 貫子洞契. 奴婢 44口.	168623	
28	準戶口	1837년(헌종 3)	漢城府	全孝顔	거주: 中部 長通坊 貫子洞契. 奴婢 44口.	168644	
29	準戶口	1837년(헌종 3)	漢城府	全宅淳	거주: 中部 長通坊 塩廛契東谷.	170645	
30	準戶口	1840년(헌종 6)	漢城府	全孝顔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46口.	168610	
31	準戶口	1843년(헌종 9)	漢城府	全孝石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11口.	168622	孝顔→改名: 孝石
32	準戶口	1843년(헌종 9)	漢城府	全宅熹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11口.	168629	
33	準戶口	1843년(헌종 9)	漢城府	全宅淳	거주: 中部 長通坊 徐千守契.	170642	
34	準戶口	1846년(헌종 12)	漢城府	全宅淳	거주: 南部 大坪坊 善山契. 奴婢 3口.	170597	
35	準戶口	1849년(헌종 15)	漢城府	全宅淳	거주: 南部 大坪坊 善山契. 奴婢 3口.	168630	
36	準戶口	1852년(철종 3)	漢城府	全宅淳	거주: 南部 大坪坊 善山契. 奴婢 3口.	170639	
37	準戶口	1855년(철종 6)	漢城府	全宅淳	거주: 南部 大坪坊 善山契. 奴婢 3口.	168616	

38	準戶口	1855년(철종 6)	漢城府	全孝石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11口.	168619	
39	準戶口	1855년(철종 6)	漢城府	全宅熹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11口.	168627	
40	準戶口	1858년(철종 9)	漢城府	全宅淳	거주: 中部 長通坊 辛亨孫契. 奴婢 3口.	168620	
41	準戶口	1858년(철종 9)	漢城府	全孝顔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10口.	168626	孝石→改名:孝顔
42	準戶口	1858년(철종 9)	漢城府	全宅熹	거주: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 奴婢 11口.	168641	
43	準戶口	1867년(고종 4)	漢城府	全永默	거주: 中部 長通坊 徐千壽契. 奴婢 2口.	168643	
44	準戶口	1873년(고종 10)	漢城府	全永默	거주: 中部 長通坊 徐千壽契.	170598	
45	準戶口	1879년(고종 16)	漢城府	全永默	거주: 中部 長通坊 徐千壽契.	168625	
46	準戶口	1885년(고종 22)	漢城府	全永默	거주: 南部 薰陶坊.	168631	
47	準戶口	1891년(고종 28)	漢城府	全恒基	거주: 南部 薰陶坊 銅峴契.	170644	
48	準戶口	1894년(고종 31)	漢城府	全恒基	거주: 南部 薰陶坊 銅峴契. 廊戶 4口.	168632	
49	戶口單子	1777년(정조 원년)	全得龜	漢城府	거주: 南部 大平坊 善山契. 奴婢 7口.	178475	
50	戶口單子	1777년(정조 원년)	全得龜	漢城府	거주: 南部 大平坊 善山契. 奴婢 11口.	178466	
51	戶口單子	1783년(정조 7)	全興大	漢城府	거주: 南部 大平坊 善山契. 奴婢 13口.	178467	
52	戶口單子	1789년(정조 13)	全興大	漢城府	거주: 南部 廣通坊一里 大多坊 北邊契. 奴婢 21口.	165867	
53	分財記	1808년(순조 8)	開城高氏	全孝曾 등 4인	全孝曾 등 全興大의 자녀 3남 1녀에게 공인권과 토지, 노비 등을 분재.	178132	
54	分財記	1812년(순조 12)	貞夫人 慶州金氏	全得龜	全爾常의 자손에게 공인권과 토지 분재.	167250	
55	貢人文書	1844년(헌종 10)	全宅熹	八寸大父	全羅道 南原官 등지의 공물권과 本文記 15장을 파는 明文.	168662	
56	貢人文書	1848년(헌종 14)	濟用監貢房 都中	全孝顔	嶺南 昌寧 등지의 공물권을 증명하는 帖文.	168657	

57	貢人文書	1850년(철종 원년)	司僕貢房都中	全孝顔	振威 穀草 2同의 貢物權을 증명하는 帖文.	168661	全文 爻周.
58	貢人文書	1860년(철종 11)	司僕貢房都中	全孝顔	振威 1同 穀草의 貢物權을 증명하는 帖文.	178127	
59	貢人文書	1860년(철종 11)	司僕貢房都中	全宅熹	振威 穀草 1同의 貢物權을 증명하는 帖文.	178128	
60	買賣明文	1789년(정조 13)	鄭英漢	全興大	坡州 廣灘面 發郎洞 九叱畓野의 食字 52답 6두락지 3부 9뭇과 本文記 3장을 48냥에 방매.	163298	
61	買賣明文	1715년(숙종 41)	李世逸	南宮建	坡州 廣灘面 軍[米+食]石의 食字 52답 6두락지 3부 9뭇을 55냥에 방매.	163292	163298의 本文記 背面: 밧도위ᄌᆞ리
62	買賣明文	1717년(숙종 43)	南宮建	金振鐸	坡州 廣灘面 軍糧石의 食字 52답 6두락지 3부 9뭇과 本文記 1장을 55냥에 방매.	163293	163298의 本文記
63	買賣明文	1745년(영조 21)	金生員奴莩立	林春華	坡州 廣灘面 九叱畓野의 食字 52답 6두락지 3부 9뭇 등을 本文記 6장, 牌子와 함께 90냥에 방매.	163291	163298의 本文記?
64	牌旨	1745년(영조 21)	上典金	奴莩立	163291 문서의 토지를 放賣.	166331	163298의 本文記
65	買賣明文	1790년(정조 14)	金生員宅奴貴福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萬字 第8直田 1日耕 11부와 本文記 5장과 牌字 1장을 30냥에 방매.	166330	
66	牌旨	1790년(정조 14)	上典金	金生員宅奴貴福	166330의 토지를 방매.	163324	166330의 牌字
67	買賣明文	1684년(숙종 10)	士見	崔墨先	坡州 東面 廣灘 發郎洞의 萬字 第8直田 1日耕 11부를 20냥에 방매.	163360	166330의 本文記.
68	買賣明文	1732년(영조 8)	崔墨先長孫子蓋知	四寸兄金驗忠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萬字 第8直田 1日耕 11부와 本文記 1장을 30냥에 방매.	163361	166330의 本文記.

69	買賣明文	1747년(영조 23)	金驗忠	朱德壽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萬字 第8直田 1日耕 11부와 本文記 2장을 30냥에 방매.	166346	166330의 本文記.
70	買賣明文	1767년(영조 43)	朱德壽	南驗起	坡州 廣灘面 發郎洞里 萬字 第8直田 1日耕과 本文記 3장을 30냥에 방매.	166347	166330의 本文記.
71	買賣明文	1788년(정조 12)	南驗起	金生員宅奴 貴福	坡州 廣灘面 發郎洞里 萬字 第8直田 1日耕 11부와 本文記 4장을 30냥에 방매.	163287	166330의 本文記.
72	買賣明文	1790년(정조 14)	鄭光春	全興大	坡州 廣灘面 九畓野 食字 7斗落只 4負 4束과 本文記 5장과 牌字 1장을 72냥에 방매.	166296	
73	買賣明文	1700년(숙종 26)	曹萬永	崔奄孫	坡州 廣灘面의 郡岱畓野 古士字, 時食字 畓 7두락지 4부 4뭇과 本文記 2장을 35냥에 방매.	163393-2	166296의 본문기. 崔奄孫의 소지, 曹永萬의 招辭, 漢城府 立案 등이 점련됨.
74	買賣明文	1718년(숙종 44)	崔泰齊	金生員宅奴 命信	坡州 廣灘面 九叱畓野의 古士字 今食字 畓 7두락지 4부 4뭇과 本文記 3장을 57냥에 방매.	163373	166296의 본문기. *奄孫->改名: 泰齊
75	買賣明文	1745년(영조 21)	金生員奴 詹立	林春華	坡州 廣灘面 九叱畓野 今食字 畓 7두락지 4부 4뭇 등을 本文記 6장과 함께 90냥에 방매.	163291	166296의 본문기.
76	牌旨	1745년(영조 21)	上典金	奴詹立	坡州 廣灘面 九叱畓野의 古士字 今食字 畓 7두락지 4부 4뭇 등을 방매.	166331	166296의 牌字
77	買賣明文	1759년(영조 35)	林聖澤	鄭壽景	坡州 廣灘面 發郎洞 九叱畓野의 食字 52답 6두락지 3부 9뭇 등과 本文記 19장을 180냥에 방매.	166352	163298의 買得文書. 166296의 舊文書 중 하나.

78	買賣文書	1788년(정조 12)	鄭英漢	鄭光春	坡州 廣灘面 九畓野 今食字畓 8두락지 4부 4뭇 등과 本文記 4(2를 수정)장과 牌子 1장을 50냥에 방매.	166332	166296의 본문기.
79	買賣文書	1790년(정조 14)	鄭英漢	全興大	坡州 廣灘面 發郞洞 九叱畓野의 食字 第20畓 7두락지 7부와 本文記 3장과 牌子 1장을 84냥에 방매.	163297	
80	買賣文書	1719년(숙종 45)	私奴曹萬永	眞外五寸叔 崔金伊	坡州 廣灘面 久畓坪의 舊寔字 今食字 第20畓 22부 8뭇 중 東邊 2夜味 7두락지 7부를 84냥에 방매.	163300	163297의 본문서.
81	買賣文書	1733년(영조 9)	班奴崔貴贊	林春華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食字 第20畓 22부 8뭇 중 東邊 2夜 7두락지 7부와 本文記 1장을 牌字와 함께 50냥에 방매.	163299-1	163297의 본문서. 招辭, 立案이 점련됨.
82	牌旨	1733년(영조 9)	上典安	奴貴贊	163299-1의 토지를 방매.	163301-2	163297의 牌旨. 所志가 점련됨.
83	買賣文書	1759년(영조 35)	林聖澤	鄭壽景	坡州 廣灘面 發郞洞 九叱畓野 今食字 第20畓 22부 8뭇 중 東邊 2夜味 7두락지 7부 등과 本文記 19장을 180냥에 방매.	166352	163298의 買得文書. 166296의 舊文書 중 하나.
84	買賣文書	1791년(정조 15)	姜生員宅奴 瓮證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駒字 第36反畓 3두락지 등을 本文記 3장과 牌字 3장과 함께 30냥에 방매.	163337	
85	牌旨	1791년(정조 15)	上典姜	奴瓮證	163337의 토지 방매.	163338	163337의 牌旨
86	買賣文書	1777년(정조 원년)	崔生員宅奴 連奉	李生員宅奴 愁獨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駒字 第36牟畓 3두락지 등을 本文記 1장과 함께 22냥에 방매.	163340-2	163337의 본문기. 牌旨 점련.
87	牌旨	1777년(정조 원년)	上典崔	奴連奉	163340-2의 토지 방매.	163340-1	163337의 牌旨.
88	買賣文書	1782년(정조 6)	李生員宅奴 守獨	姜生員宅婢 夫瓮證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駒字 第36反畓 3두락지와 本文記 2장을 24냥에 방매.	163339	163337의 본문기.

89	買賣文書	1791년(정조 15)	慶生員宅奴太振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狗坪의 食字 第65畓 32부 1뭇 20두락지와 文記 2장과 舊牌字 1장, 新牌字 1장을 240냥에 방매.	166362	
90	牌旨	1791년(정조 15)	上典慶	奴太振	166362의 토지 방매.	166360	166362의 牌旨
91	買賣文書	1761년(영조 37)	李兵使宅奴磨堂	李生員宅奴石乭伊	坡州 廣灘面의 食字 第65等 2두락지 32부 1뭇을 170냥에 방매.	166349	166362의 본문기.
92	牌旨	1761년(영조 37)	上典	奴磨堂	坡州 廣灘面의 食字 第65等 20두락지 32부 1뭇을 방매.	166329	166362의 牌旨. 墨印:安東金氏
93	買賣文書	1779년(정조 3)	李命植	慶章運	坡州 廣灘面의 食字 第65等 20두락지 32부 1뭇과 買得文記 1장과 牌子 1장을 200냥에 방매.	166363	166362의 본문기.
94	買賣文書	1791년(정조 15)	柳重曄	全興大	坡州 廣灘面 發郎洞 梧山峴의 及字 105畓 3부 7뭇 3두락지 등과 本文記 3장, 立旨 1장, 所志 1장을 20냥에 방매.	163313	
95	買賣文書	1732년(영조 8)	外六寸弟金以奉	陳仁東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及字 105畓 3부 7뭇 3두락지 등을 방매.	163396-1	163313의 본문기. 소지, 李奴有福의 다짐이 점련.
96	買賣文書	1741년(영조 17)	晉仁同	林俊起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及字 105畓 3부 7뭇 3두락지 등과 本文記 1장과 呈出立旨 1장을 25냥에 방매.	163302-2	163313의 본문기. 임준기의 招辭, 立案 등이 점련.
97	招辭	1749년(영조 25)	林俊起	漢城府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及字畓 3부 7뭇 3두락지 등을 20냥에 방매했다는 내용.	163302-1	163313의 본문기 柳萬根과 林俊起 간의 문서 미상.
98	買賣文書	1792년(정조 16)	崔書房宅奴三福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五加洞의 場字 第8畓 42부 3뭇 등 합田 37부 3日耕과 本文記 9장, 舊牌字 2장, 新牌字 1	166348	背面: 1886년 刀馬山 蓋字

					장을 400냥에 방매.		토지 일부를 康僉知에게 割賣.
99	牌旨	1792년(정조 16)	上典崔	奴三福	166348 문서의 토지를 방매.	166325	166348의 新牌字. 이외 문서 미상.
100	買賣文書	1792년(정조 16)	幼學元普義	全興大	坡州 廣灘面 狗坪의 食字 第16畓 9부 2뭇 4두락지 등을 120냥에 방매.	163368	원래 본문기 없음.
101	買賣文書	1793년(정조 17)	鄭大輝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發郞洞里의 草家 10칸 등을 22냥에 방매.	163369	돈 2냥을 加捧
102	買賣文書	1793년(정조 17)	鄭孝漢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梧山里의 草字 第76畓 4부 8뭇 5두락지와 本文記 1장, 牌字 1장을 70냥에 방매.	163379	
103	買賣文書	1756년(영조 32)	李生員宅奴 乭伊	鄭守奉	坡州 廣灘面 梧山里의 草字 第76畓 4부 8뭇 5두락지를 50냥에 방매.	166350	163379의 本文記. 이외 문서 미상.
104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金順川宅奴 蓯萬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蓋字 第35畓 東 二作 6부 4뭇 10두락지와 本文記 6장, 牌字 2장을 150냥에 방매.	163330	
105	牌旨	1794년(정조 18)	上典金	奴蓯萬	163330의 토지 방매.	163331	163330의 牌旨.
106	買賣文書	1687년(숙종 13)	幼學金塤	忠義朴卿善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古多字 量後蓋字 第35畓 東二作 5等畓 6부 4뭇 10두락지를 正銀子 30냥에 방매.	163385	163330의 본문기.
107	買賣文書	1704년(숙종 30)	忠義朴卿善	崔翊明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古多字 量後蓋字 第35 東二作 5等畓 6부 4뭇 10두락지와 文記 1장을 85냥에 방매.	163328	163330의 본문기.
108	買賣文書	1737년(영조 13)	崔宅觀	朴春瑞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古多字 量後蓋字 第35畓 東二作 5等畓 6부 4뭇 10두락지와 本文記 2장을 80냥에 방매.	163342	163330의 본문기.

109	買賣文書	1747년(영조 23)	朴道敬改名道洵	權一載	坡州 廣灘 刀馬山의 古多字 量後蓋字 第35畓 東 二作 5等畓 6부 4뭇 10두락지 등을 本文記 4장과 함께 120냥에 방매.	163332	163330의 본문기. 背面: 戊戌年 食字 沓을 尹順光에게 팔았다는 내용 기재.
110	買賣文書	1763년(영조 39)	權一載	李別提宅奴三同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古多字 量後蓋字 第35畓 東 二作 5等畓 6부 4뭇 10두락지 등을 本文記 4장과 함께 150냥에 방매.	163329	163330의 본문기. 背面: 戊戌年 食字 沓을 尹順光에게 팔았다는 내용 기재. 본문기는 4장인데 3장이라 잘못 기재.
111	牌旨	1772년(영조 48)	上典李	奴三同	163329의 토지 방매.	163344	163330의 牌旨. 背面: 戊戌年 食字 沓을 尹順光에게 팔았다는 내용 기재.
112	買賣文書	1773년(영조 49)	李別提宅奴三同	金順川宅奴占同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古多字 量後蓋字 第35畓 東 二作 5等畓 6부 4뭇 10두락지 등을 本文記 5장, 都文記 2장과 함께 160냥에 방매.	163343	163330의 본문기. 背面: 戊戌年 食字 沓을 尹順光에게 팔았다는 내용 기재.

113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尹永基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土卵里의 化字 第74畓 중 分畓 22부 11斗 5升落只를 本文記 3장과 牌字 2장과 함께 180냥에 방매.	166298	
114	買賣文書	1671년(현종 12)	私奴朴士龍	金繼男	坡州 廣灘 土亂里의 化字畓 下邊 11斗 5刀落只 등을 銀子 11냥 방매.	163334-1	166298의 본문기. 재확인 필요. 牌旨가 점련되어 있음.
115	牌旨	1671년(현종 12)	上典姜氏	奴士龍	163334-1의 토지 방매.	163334-2	위 문서가 점련되어 있음.
116	買賣文書	1713년(숙종 39)	保人金天起	李監司宅奴 天迪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化字畓 11斗 5升落只 22부와 本文記를 110냥에 방매.	163341	166298의 본문기.
117	買賣文書	1787년(정조 11)	奴有福	尹永己	坡州 廣灘面 土卵里의 化字 74 內畓 11斗 5升落只 22부 4뭇과 本文記 2장, 牌 2장을 140냥에 방매.	166297	166298의 본문기.
118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李福萬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梧加洞의 場字 第4反畓 4부 2두락지와 本文記 1장을 7냥에 방매.	163316	1냥 加捧.
119	分財記	1737년(영조 13)	同姓三寸叔 惡善	長姪福萬	坡州 廣灘面 梧加洞의 場字 第4反畓 2두락지 4부를 別給.	163317	163316의 본문기.
120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李先老味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狗坪의 食字 第63畓 2부 6뭇 3두락지 등과 本文記 16장을 70냥에 방매.	166312	
121	買賣文書	1691년(숙종 17)	私奴士堅	崔種同	坡州 廣灘面 群畓의 舊德字 量後食字 第63畓 2부 6뭇 3두락지와 本文記 1장을 銀子 9냥에 방매.	163366-1	166312의 본문기 그 이전 본문기 1장은 확인되지 않음.
122	牌旨	1691년(숙종 17)	上典柳	奴士堅	163366-1의 토지 방매.	163366-2	166312의 牌旨

123	買賣文書	1698년(숙종 24)	崔種同	僧人性熙	坡州 廣灘面 群畓野의 舊德字 量後食字 第63畓 2부 6뭇 3두락지와 本文記 2장과 牌字를 正銀子 13냥에 방매.	163392-2	166312의 본문기 입안, 초사 등의 문서가 점련되어 있음.
124	買賣文書	1711년(숙종 37)	僧性熙	戒機	坡州 廣灘面 群畓野의 舊德字 量後食字 第63畓 2부 6뭇 3두락지와 本文記 3장과 牌字 1장을 35냥에 방매.	163349	166312의 본문기
125	買賣文書	1731년(영조 7)	祖師	偉眼	坡州 廣灘面 群畓野의 舊德字 量後食字 第63畓 2부 6뭇 3두락지와 本文記 4장을 35냥에 방매.	163305	166312의 본문기
126	買賣文書	1779년(정조 3)	僧會尙	鄭大集	坡州 廣灘面 九隅野의 食字 第63畓 3두락지 2부 6뭇과 本文記 5장과 牌子 1장을 35냥에 방매.	163304	166312의 본문기 이후 李先老味(문서:166311)에게 옮겨지기까지의 문서 없음.
127	買賣文書	1724년(경종 4)	朴守儉	金貴進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被字 第8畓 南邊 2두락지 3부와 本文記 2장을 20냥에 방매.	166308	166312의 본문기
128	買賣文書	1727년(영조 3)	金貴進	申斗光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被字 第8畓 南邊 2두락지 3부와 本文記 3장을 20냥에 방매.	166309	166312의 본문기
129	買賣文書	1727년(영조 3)	申斗光	李廷蕃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被字 第8畓 南村 2두락지 3부와 本文記 4장을 20냥에 방매.	163395-4	166312의 본문기 李東郁이 柳萬根에게 파는 문서등과 점련되어 있음.
130	買賣文書	1746년(영조 22)	李東郁	柳萬根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被字 第8畓 南邊 2두락지 3부와 本文記 5장을 20냥에 방매.	163395-2	166312의 본문기

131	買賣文書	1778년(정조 2)	柳萬根	金同知奴先屎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被字 八畓 南邊 2두락지 3부와 本文記 6장을 還退하기 위하여 18냥에 방매.	163306	166312의 본문기
132	買賣文書	1782년(정조 6)	金同知奴先屎	鄭大集	坡州 廣灘面 土蘭里의 被字 第8畓 南邊 2두락지 3부와 本文記 7장을 22냥에 방매.	163307	166312의 본문기 이후 李先老味(문서:166311)에게 옮겨지기까지의 문서 없음.
133	買賣文書	1786년(정조 10)	金命喆	李先老味	坡州 廣灘面 隅靈의 食字 第63畓 3두락지 2부 6뭇 등과 本文記 15장을 70냥에 방매.	166311	166312의 본문기
134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崔同知宅奴性云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高谷里 狗坪의 駒字 第31反畓 5부 4뭇 5두락지 등과 本文記 9장, 新舊牌字 3장을 100냥에 방매.	163325	
135	牌旨	1794년(정조 18)	上典崔	奴性云	163325의 토지 방매.	163315	163325의 牌旨
136	買賣文書	1700년(숙종 26)	私奴韓信民	李尙建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寔字田 1日耕의 下邊 飜畓 2두락지 등을 15냥에 방매.	163322	163325의 본문기
137	買賣文書	1712년(숙종 38)	李尙建	韓同伊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舊寔字 今食字 田 1日耕 중 下邊의 飜畓 2두락지 1부와 文記 1장을 15냥에 방매.	163323	163325의 본문기
138	買賣文書	1718년(숙종 44)	韓同伊	金小男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舊寔字 今食字田 1日耕 중 下邊의 飜畓 2두락지 1부와 本文記 2장을 15냥에 방매.	163319	163325의 본문기
139	買賣文書	1729년(영조 5)	金小男子二奉	晉得重	坡州 廣灘 高谷里의 舊寔字 今食字 第7畓 2두락지 1부와 本文記 3장을 15냥에 방매.	163318	163325의 본문기
140	買賣文書	1743년(영조 19)	晉得重養子	林時贊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舊寔字 今食字 第7畓 2두락	163320	163325의 본문기

			弼雲		지 1부와 본문기 5장을 15냥에 방매.		본문기는 4장이어야 함.
141	買賣文書	1749년(영조 25)	林時贊	朱德壽	坡州 廣灘面 高谷里의 舊寔字 今食字 第7飜畓 2두락 1부와 本文記 5장을 15냥에 방매.	163321	163325의 본문기
142	買賣文書	1733년(영조 49)	異姓六寸弟 朱廣光屎	異姓六寸兄 南順伊	坡州 廣灘 高谷里의 舊寔字 今食字 第7飜畓 2두락 지 1부와 本文記 6장을 20냥에 방매.	163327	163325의 본문기
143	買賣文書	1778년(정조 2)	南順伊	崔生員 奴性云	坡州 廣灘面 高谷里 舊論坪의 食字 第7畓 1부와 本文記 7장을 30냥에 방매.	163326	163325의 본문기
144	買賣文書	1733년(영조 9)	崔高陽宅奴 五同	崔生員宅忠 金	坡州 廣灘面 舊論坪의 駒字 31反畓 5부 4뭇 5두락 지를 35냥에 방매.	166361	163325의 본문기
145	牌旨	1733년(영조 9)	上典崔	奴五同	166361의 토지 방매.	168743	163325의 牌旨
146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崔生員宅奴 三福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都馬山의 蓋字 第50畓 16부 2뭇 등과 本文記 2장, 新舊牌字 2장을 120냥에 방매.	166344	背面: 1886년 일부 토지 (合 5부 9뭇 1日耕)와 本文記 1장을 康僉知에게 방매.
147	牌旨	1794년(정조 18)	上典崔	奴三福	166344의 토지 방매.	166343	山多會의 본문서는 康僉知에게 주었기에 없음.
148	買賣文書	1792년(정조 16)	錦平尉宅奴 懋允	崔生員宅奴 三福	坡州 廣灘面 刀馬山의 蓋字 50畓 16부 2뭇 등을 150냥에 방매.	166345	166344의 본문기
149	牌旨	1792년(정조 16)	上典	奴懋允	166345의 토지 방매.	166342	166344의 牌旨 印文:淑寧翁主印

150	買賣文書	1794년(정조 18)	崔書房宅奴三福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都馬山의 蓋字 第49畓 25부 4뭇 15두락지와 本文記 1장, 新舊牌字 2장을 200냥에 방매.	163290	
151	牌旨	1794년(정조 18)	上典崔	奴三福	163290의 토지 방매.	168744	163290의 牌旨
152	買賣文書	1792년(정조 16)	錦平尉宅奴懋允	崔生員宅奴三福	坡州 廣灘面의 都馬山 蓋字 49畓 15두락지 25부 4뭇을 200냥에 방매.	163295	163290의 본문기
153	牌旨	1792년(정조 16)	上典	奴懋允	163295의 토지 방매.	163296	163290의 牌旨 인문:淑寧翁主印
154	買賣文書	1795년(정조 19)	李進士宅奴卜老味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소재의 토지 도합 田22日耕과 沓 61斗落과 본문기 58장, 新牌子 1장을 800냥에 방매.	166351	
155	買賣文書	1729년(영조 5)	李生員宅奴金伊	李生員宅奴豊立	坡州 廣灘面 夫金岩의 方字 제10田 2日耕 31부 2뭇과 買得文記 4장, 牌子3장을 45냥에 방매.	166327	166351의 본문기
156	買賣文書	1724년(경종 4)	朴承儉	京居李陰城宅奴得先	坡州 廣灘面 發郞洞 釜所의 萬字 17田 6부 2뭇, 19田 27부 1뭇 合 2日半耕과 本文記 7장을 55냥에 방매.	163314	166351의 본문기
157	買賣文書	1719년(숙종 45)	李僉使宅奴可也之	徐贊雄代子萬益	坡州 廣灘面 件郞洞里의 萬字 45田 16부 6뭇을 16냥에 방매.	163371	166351의 본문기
158	買賣文書	1731년(영조 7)	徐贊雄代子萬益妻金召史	李生員宅奴得先	坡州 廣灘面 件郞洞의 萬字 45田 16부 6뭇과 本文記 1장을 17냥에 방매.	163372	166351의 본문기
159	買賣文書	1698년(숙종 24)	南生員奴李之方	李生員宅奴得善	坡州 廣灘面 發郞洞里의 萬字 田18부 5뭇 2日耕을 50냥에 방매.	166358	166351의 본문기
160	買賣文書	1718년(숙종 44)	南生員宅奴之方	鄭次萬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萬字 第8畓 1두락지 8뭇을 7냥에 방매.	163286	166351의 본문기
161	買賣文書	1674년(현종 15)	朴茂金	申而亨	坡州 廣灘面 岱畓野의 食字 二作 10두락지 10부 7뭇과 本文記 1장을 正銀子 10냥에 방매.	163335	166351의 본문기

162	買賣文書	1694년(숙종 20)	申而亨	李陽德宅奴 壽萬	坡州 廣灘面 岱畓野의 食字 二作 畓 10두락지 10부 7뭇과 本文記 2장을 20냥에 방매.	163387	166351의 본문기
163	買賣文書	1797년(정조 21)	權淸安宅奴 重伊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土卵里의 被字 第1畓 9부 9뭇 등 合 13두락지와 本文記 3장, 新舊牌字 2장, 立旨 1장을 250냥에 방매.	163352	背面: 1799년 化字의 토지 일부를 鄭大集에게 줌.
164	牌旨	1797년(정조 21)	上典權	奴重伊	163352의 토지 방매.	163289	163352의 新牌字 背面: 1799년 化字 토지 일부를 鄭大集에게 줌.
165	買賣文書	1785년(정조 9)	李生員宅奴 就中	姜太奉	坡州 廣灘面 土亂里의 被字 第1畓 9부 9뭇 등을 本文記 1장, 牌字 1장, 立旨 1장과 함께 200냥에 방매.	163350	163352의 본문기 해당 문서의 본문기 1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음.
166	所志	1785년(정조 9)	李生員 宅 奴就中	城州官	李生員宅奴就中이 소장한 田畓文記, 奴婢文記가 타서 이에 대한 立旨 발급을 요청.	163354	163352의 立旨
167	牌旨	1785년(정조 9)	上典宅李	奴就中	163350의 토지 방매.	163288	163352의 舊牌字
168	還退文書	1786년(정조 10)	姜太奉	權淸安宅奴 乭伊	坡州 發朗洞 土亂里의 被字 第1畓 9부 9뭇 등을 값을 치르고 還退함.	163351	
169	買賣文書	1797년(정조 21)	生員宅奴日 金	全主簿宅奴 奇特	坡州 廣灘面 發郎洞의 方字 第15反畓 1부 4뭇 등과 本文記 3장, 不忘記 2장, 舊牌字 1장, 新牌字 1장을 310냥에 방매.	166295	166295의 舊牌字는 확인되지 않음.

170	牌旨	1797년(정조 21)	上典李	奴日金	166295의 토지 방매.	166303	166295의 新牌字
171	買賣文書	1751년(영조 27)	幼學李聖恒	幼學張樣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方字 第12畓 2부 6뭇 등의 토지를 不忘記 各 1丈과 함께 250냥에 방매.	163382	166295의 본문기.
172	不忘記	1751년(영조 27)	李聖恒	李廷芳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方字田畓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으며, 수년간의 相訟文券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불태웠다는 내용.	163380	166295의 불망기
173	不忘記	1751년(영조 27)	李廷芳	李聖恒	163380의 불망기과 동일한 내용.	163381	166295의 불망기
174	買賣文書	1758년(영조 34)	喪人張樣	幼學李亨權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方字 第12畓 2부 6뭇 등의 토지와 本文記 1장, 不忘記 2장을 250냥에 방매.	163383	166295의 본문기
175	買賣文書	1798년(정조 22)	金昌麟	全興大	交河 衙洞面 衙洞里의 豈字 第10畓 5부 6두락지와 本文記 2장, 牌字 1장을 37냥에 방매.	163362	
176	買賣文書	1698년(숙종 24)	李生員宅奴守奉	安世熙	交河 衙洞의 豈字 第10畓 5부 6두락지를 37냥에 방매.	163357	163362의 본문기
177	牌旨	1698년(숙종 24)	上典李	差奴守奉	163357의 토지 방매.	163356	163362의 牌字
178	買賣文書	1733년(영조 9)	安世熙	金僉正宅奴莫老味	交河 衙洞의 豈字 第10畓 5부 6두락지와 本文記 1장을 37냥에 방매.	163363	163362의 본문기
179	買賣文書	1799년(정조 23)	南生員宅奴太中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發郞洞의 食字 第51畓 2부 등을 100냥에 방매.	163283	
180	牌旨	1799년(정조 23)	上典南	奴太中	163283의 토지 방매.	163359	163283의 牌旨
181	買賣文書	1800년(정조 24)	元生員宅奴時同	全主簿宅奴奇特	坡州 廣灘面 社倉里 狗論坪의 食字 第3畓 3부 7뭇 등과 文記 3장과 牌子 2장을 100냥에 방매.	166294	
182	牌旨	1800년(정조 24)	上典元	奴時同	166294의 토지 방매.	166340	

183	買賣文書	1798년(정조 22)	禹生員宅奴萬才	元生員宅奴時同	坡州 廣灘面 社倉里 狗論坪의 食字 第3畓 3부 7뭇 등과 買得內本文 2張을 100냥에 방매.	163376	166294의 본문기
184	牌旨	1798년(정조 22)	上典禹	奴萬才	163376의 토지를 방매. *本文記 4장과 新牌子 1장.	163375	166294의 牌旨 163376의 내용을 보아 본문기 4장은 2장으로 바뀐 듯
185	買賣文書	1805년(순조 5)	崔擎斗	全主簿宅奴福良	坡州 廣灘面 馬場里의 鳴字 66田 15부 4뭇 2日耕과 本文記 4장, 牌子 1장을 100냥에 방매.	166339	
186	買賣文書	1775년(영조 51)	李生員宅奴五奉	金重哲	坡州 廣灘面 馬場里 鳴字 66田 15부 4뭇 2日耕과 牌字 1장을 60냥에 방매.	166292	166339의 본문기
187	牌旨	1775년(영조 51)	上典李	差奴五奉	166292의 토지 방매.	168818	166339의 牌旨
188	買賣文書	1779년(정조 3)	金重哲	李光夏	坡州 廣灘面 馬場里의 鳴字 66田 15부 4뭇 2日耕과 本文記 1장, 牌子 1장을 60냥에 방매.	166302	166339의 본문기
189	買賣文書	1782년(정조 6)	李光夏	朴聖位	坡州 廣灘面 馬場里의 鳴字 66田 15부 4뭇 2日耕과 本文記 2장, 牌子 1장을 50냥에 방매.	166338	166339의 본문기
190	買賣文書	1789년(정조 13)	朴聖位	崔敬斗	坡州 廣灘面 馬場里의 鳴字 66田 15부 4뭇 2日耕과 本文 3장과 牌字 1장을 70냥에 방매.	166293	166339의 본문기
191	買賣文書	1805년(순조 5)	崔得信	全主簿宅奴福良	坡州 廣灘面 分土洞의 萬字田 第45田 10부 8뭇과 本文記 5장, 牌子2장을 60냥에 방매.	166326	
192	買賣文書	1733년(영조 9)	奴日先	晉得重	坡州 廣灘面 扶蘇岩의 萬字 第45田 10부 8뭇을 20냥에 방매.	166323	166326의 본문기
193	牌旨	1733년(영조 9)	上典李	奴日先	166323의 토지 방매.	166322	166326의 牌旨

194	買賣文書	1742년(영조 18)	晉得重	婢五月	坡州 廣灘面 扶蘇岩의 萬字 45田 10부 8뭇과 本文記 1장을 20냥에 방매.	166318	166326의 본문기
195	買賣文書	1750년(영조 26)	幼學李德基	朱德壽	坡州 廣灘面 墳土洞의 萬字 45田 10부 8뭇과 本文記 2장을 25냥에 방매.	166319	166326의 본문기
196	買賣文書	1761년(영조 37)	朱德壽	李生員宅奴 詮男	坡州 廣灘面 墳土洞의 萬字 45田 10부 8뭇과 本文記 3장과 牌子 1장을 32냥에 방매.	166317	166326의 본문기 해당 문서의 牌旨는 16632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197	買賣文書	1804년(순조 4)	李生員宅奴 福老味	崔得信	坡州 廣灘面 分土洞의 萬字 第45田 10부 8뭇과 本文記 4장과 牌子 1장, 新牌子 1장, 買得文記 1장을 60냥에 방매.	166320	166326의 본문기
198	牌旨	1804년(순조 4)	上典李	奴福老味	166320의 토지 방매.	166359	166326의 牌旨
199	買賣文書	1811년(순조 11)	元生員宅奴 德良	全主簿宅奴 福良	坡州 廣灘面 狗坪畓의 食字 48畓 2부 2뭇 등을 本文記 2장, 牌子 3장과 함께 110냥에 방매.	166316	본문기 미상.

24) 문서는 공문서, 사문서를 종류별로 모아 제시하였다. 단, 매매문서의 경우 전흥대 집안에서 매매할 당시 작성된 문서를 먼저 제시하고, 구문서는 시기순으로 수록하되, 비고에 000000번의 본문기 등으로 관계를 표현해두었다.